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7. 11. 16(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지민, 이정수, 이찬희, 이호열, 임영애,
전봉희, 주상희, 천득염 (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 2~4 안건은 국고보조사업 심의 안건

1	구미 대둔사 대응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공개
2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탑비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재심의)	공개
3	서울 흥인지문 성벽 보존처리(오염물질 세척)	공개
4	서울 살곶이 다리 원형복구 및 보수공사(재심의)	공개
5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 지장전 건립(5차)	공개
6	고성 육송정 홍교 주변 발전시설(태양광 발전) 설치	공개
7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남산공원 경관시설 설치(2차)	공개
8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변 석교 및 석축 설치(2차)	공개
9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연미사 산신각 신축(2차)	공개
10	문경 봉암사 극락전 주변 종교시설(창고) 신축	공개
11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정법궁 철거 후 신축(2차)	공개
12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	공개
13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미상 주변 근생시설 건립	공개
14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창고시설 건립	공개
15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건립(2차)	공개
16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진입로 확·포장(2차)	공개
17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관광농원 조성(허가사항 변경, 3차)	공개
18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공개
1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검토사항】		
20	영주 부석사 종합정비계획 검토	공개
21	고창 선운사 종합정비계획 검토	공개
22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검토·승인 계획 검토	공개
【보고사항】		
23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 소호현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상수도 지하수 개발 공사 -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주변 행사(산사음악회) 개최 -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단독주택 건립 - 부산 운수사 대응전 주변 문화재 시굴조사 -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재허가) - 진주 용암사지 승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 주변 이동통신 시설물 설치 -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주변 백화산 등산로 정비 - 창녕 석빙고 주변 하천 우수유입 차단을 위한 신설 관로 설치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가설건축물(온실) 축조 -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주변 괘불대 철거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사항 변경)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숙박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 -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하수관로 설치·교체 공사 - 정읍 피향정 주변 함벽루 증축 및 데크 설치 -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침비 주변 단독주택 건립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숙박시설(펜션) 신축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7-13-001

1. 구미 대둔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구미 대둔사 대웅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구미시 소재 「구미 대둔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7년 건축문화재분과 제8차 회의(2017.08.01)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7.09.01~'17.10.02)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2호 「대둔사 대웅전」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구미 대둔사 대웅전(龜尾 大菴寺 大雄殿)
 - 소유자(관리자) : 대둔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옥관로 691-78
 - 조성연대 : 조선 중기
 - 지정면적 : 178㎡(보호구역 2,646.6㎡)
 - 양 식 : 다포계목구조,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의견('16.06.22)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06.22	대상문화재	구미 대둔사 대웅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구미 대둔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6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옥관로 691-78
- 구조형식 : 다포계 한식목구조,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
- 건축시기 : 조선 중후기
- 소유자 : 대한불교 조계종 대둔사

1. 대둔사의 연혁

지금의 대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直指寺)의 말사이다. 서기 446년 화상 아도(阿道)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으며, 1231년(고려 고종 18) 몽고의 침략으로 소실된 것을 충렬왕 때 왕자 왕소군(王小君)이 출가하여 중창했다고 한다. 1606년(선조 39) 사명당 유정(惟政)이 중건하여 승군(僧軍)을 주둔시켰다고 하며, 당시 부속 암자 수가 1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둔사(大屯寺)는 구미시 옥관동에 있는 복우산(伏牛山) 동쪽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이 터는 본래 대둔산(大菴山) 대둔사(大菴寺)의 속암(屬庵) 청련암(靑蓮庵)이 있던 자리로, 본사인 대둔사가 소실(燒失) 폐사된 뒤 이곳으로 본사를 옮겨와 사명(寺名)을 대둔사라 했다고 한다. 1618년(광해군 10)에 편찬한 『一善誌』에 "大菴寺在大菴山北"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초까지 폐사된 대둔사가 대둔산 북쪽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사였던 대둔사의 폐사 시기 및 청련암을 언제부터 대둔사로 불려온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제강점기에는 시왕전(현존하지 않음)의 불상까지 진주의 어느 절로 옮겨 가는 수난을 겪었으며, 사찰의 부속 암자도 해체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와 신도들의 모금과 문화재(대웅전) 보수비를 지원받아 수차례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 대둔사는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사역(寺域)에 남에서 북으로 요사채 2동을 비롯 삼성각, 대웅전, 명부전, 응진전 등이 벌여 배치한 형태이고, 사찰의 진입부는 남동편에 있다. 가람배치는 사역의 중심부에 주불전인 대웅전을 동향하게 건축하고, 그 우측(북)에 명부전, 대웅전 앞마당 남측에 요사채 2동을 각각 배치한 형태이다. 대웅전 앞에는 비교적 넓은 마당이 형성되어 있고, 마당 북측

의 구릉위에 부불전인 응진전이 남향하고 있다. 현재의 가람 배치에서는 별다른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석조물로는 대웅전 앞에 있는 1666년(현종 7)에 만든 幢竿支柱石을 비롯 부도 곁에 1812년(순조 12)에 세운 성과대사비(性波大師碑)와 석종형인 완화당(翫花堂) 부도가 남아있다. 그 외에 조사(祖師)들의 진영(眞影)을 그린 탕화가 있다. 가람 내 주요 전각의 건축형식은 아래와 같다.

표 1 주요 전각의 건축형식

전각명	규모	형식	내용
대웅전	정면 3칸, 측면 3칸	다포식 팔작집	건칠 기법으로 조성된 고려시대 아미타여래좌상(보물 1633호) 봉안
응진전	정면 3칸, 측면 2칸	주심포식 겹처마 맞배집	석가여래삼존상(?), 16나한상, 동자상, 나한탱화 등 봉안 본존을 비롯 협시보살상은 조선 후기에 조성한 것
명부전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맞배집	지장보살과 시왕상 봉안 1714년(숙종 40)에 조성된 幽冥圖 1폭이 있으며, 연대가 뚜렷하여 탕화연구의 중요한 자료 祖師들의 眞影 봉안
산신각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집	

2. 대둔사 대웅전의 연혁

보물 승격 대상인 대둔사 대웅전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2호(1982년 8월 4일지정)로 17세기 초에 창건 또는 중창된 후 수차례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7년 보수시 종도리에서 한지에 쓴 상량문(크기:65×103cm)과 그 이전의 간략한 중창기록(시주질, 목수질 등)도 함께 발견되어 그 연혁을 대강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발견된 상량문은 1987년 보수시 다시 제자리에 놓였다고 하며, 승격신청서에는 당시의 상량문이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보물 승격 신청서에 기재된 고문서의 기록을 통해 대둔사 대웅전의 연혁과 참여 목수 등을 살펴볼 수 있으나 기록이 소략하여 수리 범위와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대둔사 대웅전은 1622년(중창), 1688년(2중창), 1759년(5중창), 1796~

1804년(6중창) 등 4차례의 중창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상량문 전문을 알 수 있는 것은 1804년(嘉慶 9: 순조 4)에 있었던 여섯 번째 중창 때 지은 것이 유일하다. 1804년 중창시 쓴 상량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2참조)

“(중략) 산이 선산의 북쪽에 높이 솟았으니 고려 보조(普照) 국사(國師: 호, 목우자)가 처음 사람을 선발하던 곳이다. 절이 산시슥에 나란히 벌여 섰으니 응해 선사가 삼창하였다. (중략) 대웅전이 기울고 기와가 떨어져 기거하는 이는 그것을 시름하였고, 더러는 무너지니 만나는 이마다 이를 한탄하였다. 이에 가경 첫해(1796년)부터 흰쥐의 해 첫해(1804년, 갑자)까지 노소 승려가 합심 협력하여 改建하는 큰 役事에 온 힘을 기울였고, 신도들은 재물을 보시하여 큰 복 받기를 발원하였다. 솜씨 좋은 목수를 불러 다듬되 휘어진 나무라도 여기라고 노승이 말하고, 도감을 정하여 절용하였다.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이는 승 법흥이다. 옛 제도를 따라 수리하며 오랜 세월에 낡은 초석을 새로 했으니 길한 날을 가려 낙성하니 사철의 경사스러움은 만물을 더욱 윤택하게 하도다.(중략) 청가경 9년(1804) 흰쥐의 해 초여름 4월 7일 정오에 상량하다.”

<...山高出於善北 牧牛子之初銓 寺列立於山腰 應海禪之三創...(중략)...大雄法殿 傾而落之 居者愁之 轟而頽之 遇者嘆之 是故 嘉慶之初 白鼠之元 老少衲僧 合心協力 載營改搆之巨役 山野檀越 發願施財 受種重理之大福 招來大匠斷而 榑之重演老德 占定都監節而 用之法洪上人 仍舊制而補闕千古之弊礎重新 涓吉辰而洛城四時之景物增潤...(중략)...嘉慶玖年白鼠孟夏初七日午時上梁 性波門人笠潭包允謹識>

위 상량문(1804년)의 주된 내용은 대웅전이 기울고 기와가 떨어져 이를 걱정하다가 1796년부터 노소 승려가 합심하여 재물을 모으는 등 큰 역사(役事)를 비로소 시작하여 목수를 초빙 옛 제도를 따라 중창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내용 중에 “오랜 세월에 낡은 초석을 새로 했으니”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중창공사가 전면 해체 수리에 해당하는 큰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상량문을 살펴볼 때 화재로 소실되어 중창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다만 오랜 기간(1796년부터 1804년까지 8년간) 중창하는 역사(役事)를 진행하여 퇴락하고 기운 대웅전을 해체하고 수리한 것으로 보이나 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수리범위는 알 수 없다. 현존 건물의 건축양식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지

붕 수리와 드잡이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더해 부식재를 교체하는 정도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대둔사 대웅전은 전반적으로 17세기 초, 중엽(1622년, 1688년)에서 18세기 중엽(1759년)의 다포계 건축양식을 근간으로 19세기 초(1896~1804년)의 건축양식이 부분적으로 채용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공포를 비롯한 각부의 세부형식과 구성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건축연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들어와 1982년 8월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2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서 보호를 받았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후 두 차례의 보수공사가 있었다. 먼저 1896년 12월부터 1987년 6월까지 드잡이 및 공포 이상의 해체 수리가 있었으며, 이때 부식재 교체와 지붕 번와 보수를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방연제를 도포했다. 이어 1999년에는 대웅전 뒤편의 자연석 석축 및 배수로를 정비하였다.

표 2 고문서에 보이는 대웅전 중창기록

구분	중창 연혁	중창연도	내용
4중창 (?)	大明萬曆四十二年甲寅孟夏日上梁 四重創	1614년	아래 중창 기록과 부합하지 않음 (사찰의 중창 기록으로 보임)
중창	大明天啓二年壬戌四月日重創秩都大木戒殊性連竹海勝進慈仁戒祖	1622년	승장(僧匠)에 의한 공사
2중창	康熙二十七年戊辰二月日二創秩都片手比丘一淳副片手比丘三仁	1688년	승장(僧匠)에 의한 공사
5중창	乾隆二十四年己卯十二月十一日五重創始役庚辰五月上院畢也都片手韓聖載鄭尙位	1759년	1759년에 시작하여 이듬해 1760년(庚辰)에 준공, 민간장인이 공역 담당
6중창	嘉慶玖年甲子四月日六重創秩三綱僧統 宜弘 持寺義訓 三賢 旨善	1804년	
	문화재 지정: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2호(1982년 8월 4일 지정)	1982년	경북유형문화재 제162호
7중창	1987년(乙卯) 문화재 보수 (공사기간: 86.12.1 ~ 87.6.5)	1987년	드잡이, 공포이상 해체하고 부식재 교체 후 번와 보수/ 방연제 도포
8중창	1999년 문화재 보수공사	1999년	대웅전 뒤편 자연석 석축 및 배수로 정비

3. 대웅전의 건축 특성

1) 평면

대둔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높은 기단 위에서 동향(東向)하고 있다. 이주법(移柱法)에 따라 내진 고주를 외진(外陣) 주열(柱列)에서 뒤로 480mm 후퇴시키고, 내진 고주 사이에 후불벽을 치고 거기에 붙여 수미단(須彌壇)을 두고 아미타여래좌상을 모셨다. 수미단에 모신 아미타여래좌상(阿彌陀如來坐像)은 고려후기에 만든 건칠 불상으로 2010년에 보물 제1633호로 지정되었다.

대웅전의 정면 총길이는 9,240mm(약 31자), 측면 총길이는 7,140mm(약 24자)로, 정면이 측면보다 2,100mm 더 긴 장방형이며, 평면 비(도리통 전체길이 / 양통 전체길이)는 1 : 1.29이다. 먼저 정면의 주칸을 살펴보면 어칸이 3,300mm(약 11자), 좌우 협칸이 2,970mm(약 10자)로 어칸이 협칸에 비해 약 1자정도 더 넓다. 측면 주칸은 가운데 칸이 3,300mm, 좌우 협칸이 1,920mm(약 6.5자)로, 어칸만 정면 주칸과 같고 협칸은 정면에 비해 3.5자 정도 좁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장귀틀과 동귀틀을 사용하여 마루틀을 짜고 그 사이에 선자귀로 취목한 두꺼운 마루청판을 끼워 마감했다. 마루는 전후 어칸 사이에 긴 장귀틀을 건 다음 장귀틀 좌우에 각각 4개씩의 동귀틀을 결구하여 정(井)자형 귀틀을 만들고 청판을 끼워 넣은 형식이다. 동귀틀의 한쪽은 문선, 벽선 또는 하방 등에 직접 결구했으며, 전후면 내측(內側)에는 별도의 변귀틀을 두고 거기에 청판을 끼웠다. 그리고 정면 기둥 하부에 목편(木片)으로 메워 놓은 헛구멍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건물 정면에 봉정사 대웅전(국보 311호)처럼 마루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웅전 내부의 후불벽에 붙여 작은 수미단(須彌壇)을 만들고 그 상부에 고려 시기에 만든 건칠 아미타여래좌상(보물 1633호)을 봉안했다. 수미단은 제3열의 외진주열보다 야간 뒤로 이주(移柱)시켜 세운 후불고주에 맞추어 만든 것으로, 기둥(후불고주)의 굵기는 외진주의 1/2정도에 불과하다. 수미단은 불전의 평면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나 상부에는 매우 장식적인 대형 단집을 시설하여 불교의 장엄을 표현했다. 아(亞)자형 평면의 이 단집은 외 7출목의 다포식 공포와 겹처

마를 가진 화려하고 장엄한 불전 형태로, 공포로 보아 17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단집의 기둥 사이는 낙양각으로 장식하였으며, 기와골 끝에는 암수막새를 섬세하게 새겼다. 대개 단집의 내부(불단 상부)에는 다양한 불교 장엄조각들을 시설하여 불전의 장엄을 강조하나 대둔사 대웅전의 경우 단집을 구성하는 기둥의 하단에만 소형의 용두(龍頭)와 연봉(蓮峯), 연화(蓮花) 등을 사용하여 장식했을 뿐 단집 안쪽에는 불교 장엄을 나타내는 조각물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단집의 천정 반자에 그린 학(鶴) 등의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2) 구조와 공포 및 창호, 단청

(1)구조

대웅전은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장대석과 장방형 판석을 사용하여 약 2m 정도(전면)로 높게 쌓은 기단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지대가 높은 배면과 좌우측면 및 정면 기단 위에는 장대석과 판석 등을 사용하여 외별대(좌측면, 배면) 또는 두별대(우측면) 기단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정면에서 대웅전을 바라볼 때 마치 상하 2단의 기단 높은 위에 건물이 놓인 것처럼 보인다. 장대석 또는 판석을 사용하여 조성한 상단의 기단 윗면은 강회다짐하여 마감했다. 전면 기단 앞쪽에 막돌을 쌓아 화단을 만들고 화초를 심어 놓은 것은 근년에 만든 것으로 추후 정비시 제거하고 화초에 가려진 기단의 앞면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면 어칸 앞쪽에는 폭이 넓은 장대석 계단이 놓여 있고, 그 좌우에도 돌 계단이 있는데, 특히 정면의 장대석 기단은 근년에 만든 것으로 원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단 위에 놓인 자연석 초석은 그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직경이 70~85cm 정도이고, 기단바닥에서 위로 약 8~15cm정도 드러나 있다. 기둥은 민흘림 수법으로 치목한 원주(圓柱)로, 초석 위에 덩벙주초 수법으로 세워 상부가구를 받도록 했다. 기둥 중에서 민흘림의 정도가 가장 뚜렷한 것은 정면 좌측 우주이다. 그리고 꺾기둥의 경우 시각적인 안정감 및 지붕 하중을 지지하는데 유리하도록 외진평주보다 3~5치(寸) 정도 더 굵게 치목하여 사용했다. 대부분의 기둥은 동바리 이음하여 사용했으며, 이는 수차례의 중창과 수리시 사용 가능한 구(舊)부

재를 동바리이음 등의 기법으로 재사용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네 귀에는 팔각형 단면의 활주를 세워 추녀와 사례를 지지하도록 했으며, 하부에는 팔각형의 활주 초석이 사용되었다.

상부가구는 대량과 종량을 사용한 1고주 5량가이다. 전후(前後) 기둥 위에 내외 4출목의 주상포를 조립한 다음 통재의 긴 대량을 올리고, 여기에 주심도리와 내외 출목도리를 걸구했다. 대량 위에는 삼분변작법으로 종량을 걸고, 그 상부에 키 큰 제형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와 장혀를 지지하도록 했다. 종량은 동자주 상부의 주두와 보아지(행공) 위에 놓여 좌우 중도리와 연목을 받는다. 대량은 전후면의 기둥 상부에 꾸민 내외 4출목의 주상포에 의해 지지되며, 마름모꼴의 대량의 머리는 외출목 도리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대량의 양 끝에는 외목도리와 주심도리가 각각 놓여 장연을 받고 있다.

대웅전 내부의 중도리 사이에는 소란반자를 꾸몄으며, 소란반자와 내목도리 사이에는 폭이 좁은 빗반자를 시설했다. 소란반자에 의해 종보 상부가 가려져 건물 내부에서 상부가구의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 측면 중앙간의 평주 위에 놓인 주상포에서 대량 위로 각각 2개씩의 층량을 걸어 측면의 지붕가구를 받도록 했다. 층량의 머리는 짧게 끊은 형태로 용두(龍頭) 등으로 꾸미지 않았다. 층량 위에 외기도리를 짜서 외곽의 우물반자와의 경계부를 구성했으며, 불상을 배치한 어칸에는 위계가 높은 소란반자를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층급(層級) 반자를 형성하고 갖은 금단청을 하여 불교의 장엄을 표현하였다.

대둔사 대웅전은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합각부가 측면 외진주열보다 밖에 형성되어 있어 건물의 규모에 비해 지붕이 장중한 느낌을 준다. 건물의 사면(四面)에는 부연을 사용하여 처마를 길게 내밀었는데, 전후면의 처마 내민길이는 2,415mm 정도이다. 지붕에는 한식기와를 덮었는데, 암키와와 수키와는 근년에 번와하여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처마에는 암수 막새기와를 사용하여 마감했으며, 기와끝 끝에는 명문이 있는 오래된 암막새기와와 함께 새로 만든 암막새기와가 놓여 있다. 지붕의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에 9단의 적재를 쌓는 방식으로 높은 마루등을 형성했으며, 용마루 양끝에는 암막새기와 형태의 망와를 올렸다. 내림마루와 추녀마루는 공히 착고, 부고 위에 각각 7단의 적재를 쌓아 만들었으

며, 지붕 및 기와, 기와골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2)공포

대둔사 대웅전은 보기 드문 내외 4출목의 다포계 불전이라는데 큰 특징이 있다. 이 건물의 공포는 내외 9포작으로, 기둥머리에 창방을 결구하고, 그 위에 평평한 평방을 올리고 총 32구의 공포를 조립했다. 주두(또는 대접받침)을 놓고 귀포 4구, 주상포 8구, 공간포 20구를 조립했다. 평방을 받는 창방은 궁 글러 모를 죽이는 고식(古式)의 기법으로 치목하여 사용했으며, 평방은 정방형에 가까운 각재를 옆으로 이어 사용했다. 이처럼 정방형 각재를 옆으로 이어 폭이 넓은 평방재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건축 당시의 목재 수급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둔사 대웅전의 공포에는 대첨, 중첨, 소첨으로 구분되는 세 종류의 첨차와 주두(대접받침 포함), 소로, 제공, 운공, 장여 등이 사용되었다. 즉 주심(柱心)과 외1, 2출목에는 소첨, 중첨, 대첨의 세 가지 첨차, 외 3출목에는 소첨과 중첨, 외 4출목에는 소첨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소첨과 대첨 사이에 중첨을 끼워 공포대의 수직성을 크게 강조한 위한 것으로 주로 중부 내륙지역의 일부 다포계 불전(법주사 팔상전, 대웅보전, 원통보전 및 직지사 대웅전)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포계 불전 중에서도 소첨, 중첨, 대첨이라는 세 가지 첨차를 모두 사용하여 공포를 조립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며, 여기에 더하여 내외 4출목의 많은 출목을 가진 다포식 불전은 더욱 희소하다. 따라서 공포의 세부 특징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대둔사 대웅전은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첨차는 양끝을 직절(直切)한 다음 밑면을 약하게 사절(斜切)한 것으로, 상면(上面)에는 공안을 새기지 않은 조금은 투박한 형태이다. 이 같은 형태의 첨차는 경상도지역 다포식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첨차와 결구된 제공은 옆면에는 초엽(草葉) 등을 조각하지 않고, 단청으로 칠했다. 단청으로 칠했기 때문에 장식적 성격이 강하지 않다.

건물 네 귀에서 이방 위에 놓인 귀포는 귀한대 제공과 각 4개씩의 좌우대로 구성되어 있다. 귀포는 주상포에 사용된 양서형 쇠서와 동일한 형태의 귀한대

제공을 4번 겹쳐 올린 다음 그 위에 연꽃을 새긴 운공과 용두(龍頭)를 겹쳐 추녀를 받도록 했으며, 귀한대 좌우에는 4개씩의 좌대와 우대를 병첨과 견고하게 결구했다. 그런데 좌우대는 형식적인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살미의 끝을 양서형으로 처리한 것과 양서가 없는 간략한 교두형을 병용한 것으로 이는 귀포의 발달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 건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귀포에 바짝 붙여 2구의 공간포(정면 1구, 측면 1구)를 둔 것도 보기 드문 것이다. 이 공간포는 귀한대에서 도리방향으로 길게 뻗은 병첨과 제공을 결구하여 만든 것으로, 귀포에 집중되는 지붕하중의 지지 및 장엄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 네 귀에 놓인 추녀의 끝부분에는 활주를 세워 놓았다.

외부 공포의 형식과 구성을 살펴보면 정면과 측면의 공포는 유사성이 높은 반면 배면 공포는 이와 다르다. 배면 공포에는 삼분두 및 봉두(鳳頭, 귀포 좌우대 상부)가 쓰였고, 살미에서 뻗어 나온 양서 형태도 정 측면과 달라 세부 형식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배면 공포에는 고졸한 형태의 삼분두와 함께 19세기 이후 주로 나타나는 봉두(鳳頭)도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는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차(時差)를 두고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1796년부터 1804년 사이의 중창시 배면에만 구재(舊材, 舊공포재)를 사용하고, 정면과 측면에는 18세기중엽 이후의 장식적인 경향에 맞추어 신재를 사용하여 정면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포식 공포는 대개 양서형 제공살미 상부에 익공과 운공을 차례로 조립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둔사 대웅전의 경우 정면 주상포와 공간포의 구성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주상포는 운공 하부까지 양서형 살미를 짜 올린 다음 그 위에 연화(蓮花)를 새긴 운공형 부재를 끼워 장식성을 높였다. 정면의 공간포도 살미의 형태 등은 주상포와 동일하나 사제공 상부에 두 개의 큰 연봉(蓮峯)을 새긴 운공을 올려 외출목도리를 받게 한 것이 다르다. 주상포와 공간포의 살미 끝부분에 새긴 양서형 쇠서는 섬교한 형태로 쇠서의 화두자 부분에 작은 연봉을 간략히 조식(彫飾)한 것으로 쇠서 상부에는 연봉이나 연화(蓮花)등을 전혀 새기지 않았다. 정면과 측면 공포의 살미 외단에 사용된 양서형 쇠서는 제공의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원호를 그리며 내려오다 휘어 오른 형태로 제공

의 하단에서 곧게 뻗은 양서형 쇠서에 비해 수직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배면 공포의 특색은 공간포에서 잘 나타난다. 즉 사제공 위에 고졸한 삼분두형 제공과 운궁형 부재를 올려 외출목 도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상포의 경우 공간포와 달리 외4출목의 소침에 삼분두형 제공 대신 장식적인 긴 운궁형 부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주상포의 상부에 마름모꼴의 보머리가 돌출되어 있어 삼분두와 운궁을 함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면 공포의 최상단에 긴 운궁형 부재를 사용한 것은 대둔사 대응전 배면 공포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 같은 운궁형 부재는 중부 내륙지역의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돈암서원 응도당 등에서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내부 공포도 외부 공포와 같은 내4출목의 9포작이다. 내부 공포에 사용된 첨차의 세부 형태는 주상포와 공간포의 구분 없이 유사하나 살미의 뿌리는 위치와 공포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면 주상포의 살미 내단은 교두형 첨차를 짜 맞춘 간략한 형태로, 그 위에 초엽(草葉) 등을 새긴 보아지형 부재를 길게 돌출시켜 대량을 받는다. 정면 공간포의 살미 내단에는 연화(蓮花), 연봉(蓮峯) 및 초엽(草葉) 등을 투박하게 조각해 놓았다. 배면 공포의 살미 내단은 정면 주상포와 같은 간략하고 견실한 교두형이다.

대둔사 대응전은 공포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다포식 건축에서 공포를 배치할 때 포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포벽의 간격(형태)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 건물의 경우 협칸의 주간이 크게 달라 공포 간격을 일정하게 할 수 없어, 첨차의 길이를 조정하는 수법으로 포벽의 형태와 간격을 조정했다.

(3) 창호

대응전의 정면 창호를 살펴보면 어칸에만 삼분합의 안여단이 빗꽃살문을 달고, 좌우 협칸에는 삼분합의 들어열개 띠살문이 달려있다. 어칸의 삼분합 안여단이문의 상하에는 문장부가 시설되어 있다. 이들 정면 창호는 대부분 근년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측면의 창호는 좌우가 크게 다른데, 좌측면의 경우 가운데 칸에만 삼분합 띠살문을 달았으며, 좌우 협칸에는 각각 높이가 다른 외짝 띠살

문을 시설했다. 우측면에는 앞쪽의 좌 협칸(앞)에 만 궁창널이 있는 외쪽 띠살문을 달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벽으로 처리했다.

배면 어칸에는 외쪽의 여단이 띠살문(근년 교체)을 달았는데, 문틀 한편에 두터운 문장부를 만들어 이를 상하 문둔테에 끼워 여단게 했다. 그리고 우협칸에는 두 쪽의 여단이 띠장 판문이 달려 있다. 이 판문은 하부에 청판을 끼워 만든 머름을 두고 그 위에 시설한 것으로, 문장부를 긴 문둔테에 고정하고 여단는다. 배면 좌협칸에는 창호를 시설하지 않고 회사벽에 벽화를 그려 마감했다. 정면의 꽃살창과 배면의 판문을 제외한 나머지 세살창과 창호철물(돌쩌귀와 정첩)은 대부분 세부형식과 보존 상태를 살펴볼 때 근년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정면의 꽃살창과 배면의 판문은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창호를 달기하기 만든 문울거미는 문설주와 문인방을 연귀맞춤하고 설주를 하방에 장부 맞춤하여 만든 것으로 넉넉한 부재 크기와 연귀맞춤한 기법 등을 볼 때 17~18세기의 건축수법을 잘 보여준다.

(4) 단청

대둔사 대웅전의 내부단청은 탕화를 조성하던 시기에 그린 것으로 보인다. 내부 단청의 특징은 머리초에 녹색의 실만 사용하고, 황색의 실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먹덩기기를 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이다. 소란반자의 초는 주홍바탕에 육원공(六圓孔)을 그리고 황색으로 옴, 마, 니, 반, 메, 흠이라는 범자(梵字)를 쓴 것으로, 중앙에도 범자(梵字)를 써 놓았다. 소란의 안쪽에는 국화꽃잎 무늬를 쌍선(雙線) 사이로 이빛으로 그렸으며, 반자틀에는 십자(十字) 중심으로 주화(朱花) 무늬에 쇠코 곡절(曲折) 골팡이 문양을 그렸다. 계풍은 육색(肉色) 바탕에 양변 주홍(朱紅) 굵기, 중앙 먹굵기로 마감했다. 소란대 주변의 조각에는 육색(肉色)에 주홍(朱紅)을 이빛으로 그렸다. 좌우 협칸 상부의 반자에는 삼빛 입연화문양(立蓮花紋樣) 또는 삼빛 평연화문양(平蓮花紋樣)을 주제로 단청했다.

대량의 머리초 문양은 녹화(녹색연화) 병머리초에 금 직휘와 하엽 직휘를 둔 것으로 황실과 먹 덩기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첨차는 변과 뱃바닥 양쪽을 쇠코 골팡이 문양으로 그렸는데, 이러한 문양은 대둔사 대웅전의 내부 단청이 고식

(古式)임을 말해준다. 소로에는 쇠코 골팡이 문양이나 황실을 쓰지 않았다. 평방의 머리초는 녹화 병머리초이며, 계풍 사이에는 너록(磊綠) 바탕의 장단원(壯丹圓) 안에 먹칠한 후 분으로 범서를 쓴 삼원(三圓) 문양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려 놓았다. 창방의 머리초는 녹화 병머리초에 하엽 직휘를 더한 모습이며, 계풍 사이에는 보기 드문 문양들을 많이 보인다. 즉 점(點) 무늬, 비룡(飛龍) 무늬를 비롯 기린(麒麟), 천마상(天馬像) 문양을 사용했는데, 이들 문양은 지금의 복잡한 문양이 유행하기 전(前)인 조선중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단청의 경우 급격히 퇴락하고 있어 문양 기록화를 선행 후 포수라도 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지정가치와 조사자 의견

구미 대둔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무고주 5량가(五樑架) 건물로, 네 귀에 활주(活柱)를 세워 추녀를 받도록 했다. 기둥은 모두 원형이며, 기둥은 배흘림과 민흘림을 혼용하여 치목하였으며, 기둥 상부에 창방을 결구하였고, 그 위에 평방을 올려놓는 다포양식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기둥, 창방, 문틀, 벽선, 공포재 등의 치목은 대들보 길이의 1/2이 내외 4출목의 주상포 위에 놓여 있으며, 측면 중앙칸 기둥 상부에 충량(衝樑)을 걸어 측면의 지붕가구를 지탱하게 했다. 불단(佛壇) 위의 천장에는 아자(亞字) 모양의 평면과 지붕이 있는 7출목의 다포로 된 단집이 있다. 이 건물의 건립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으나 중창 기록을 통해 살펴볼 때 17세기 초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수차례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여러 시기의 건축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외관과 공포형식으로 볼 때 주로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건립된 다포계 불전의 건축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창방 이하 벽체에 들인 문얼굴, 문선, 벽선 및 마루 등도 대체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창호는 배면 창호만 원형에 가깝고 나머지 삼면의 창호는 모두 후대 개변된 것으로 차후 정비를 요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구미 대둔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조선중후기에 건립한 다포식 불전으로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건

물은 사례가 드문 내외 4출목의 다포식 공포를 가진 불전이라는 점과 귀포를 비롯한 공포의 세부형식과 구성에 조선중기의 다포식 건축이 후기형식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이 잘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다포식 건축의 변천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전후면의 상이한 공포형식을 비롯 귀포 좌우대에 보이는 고식의 교두형 제공, 주상포와 공간포의 상이한 공포 구성 그리고 배면 공간포에 사용된 고졸한 삼분두 등은 이 건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첨차형식과 공포 상부에 사용된 독특한 운궁형 부재도 이 건물의 가치를 더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공간이 없는 투박한 형식의 경상도 지역의 특색을 가진 첨차와 가진 길게 돌출한 독특한 형태의 중부내륙지역의 특색을 가진 운궁형 부재는 당시 건축문화의 교류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공포의 살미 외단에는 양서형 쇠서를 조각했는데, 그 모양을 살펴보면 정면과 측면의 것이 유사하고 배면의 것이 이보다 더 고졸하여 차이를 보인다. 즉 쇠서의 형태 및 화두자의 조각 수법 등으로 볼 때 배면 공포의 고졸한 형태의 쇠서가 후에 장식성과 수직성이 보다 강조된 쇠서 형식(정, 측면 공포)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포형식의 차이는 16세기 초 이후 50~60여년마다 있었던 건물의 중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둔사 대웅전의 내부단청은 탕화를 조성하던 시기에 그린 것으로 보인다. 내부 단청의 특징은 머리초에 녹색 실만 사용하고, 황색 실을 사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먹덩기기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 또한 대량, 평방, 창방 및 반자 등에 고졸한 단청 문양이 잘 남아 있어 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만 외부의 단청은 근년에 개칠한 것으로 가치를 논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대둔사 대웅전은 17세기 초부터 19세기초까지 수차례 중창된 된 다포계 주불전으로 공포와 단청, 수장 등에 조선중기적인 수법과 함께 일부 후기적인 양상도 함께 보이고 있다. 특히 평면과 입면구성 그리고 공포 형식과 배치에서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이 후기로 바뀌어 가는 과도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됨.

기타

- 현상변경허용기준은 기 고시된 것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보존상의 큰 문제는 없으나 현재 건물의 정면 우측의 귀포 상부에 있는 병침 등이 파손되어 귀포가 왼쪽으로 기운바 모니터링을 거쳐 적절한 수리가 필요함.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에 의해 일부 고맥이가 파손된바 관리가 필요함. 전면 기단 앞쪽의 화단은 건물 보존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06.22	대상문화재	구미 대둔사 대웅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구미 대둔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6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조사자 : ○○○, 한국건축사, ○○대학교, 교수

2. 문화재종류 : 보물

3. 문화재명칭 : 구미 대둔사 대웅전(龜尾 大菴寺 大雄殿)

4.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대둔사¹⁾는 복우산(伏牛山) 동쪽 중턱에 위치하여 멀리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다. 옥관리 마을에서 산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면 남동쪽 끝에 남북으로 길게 대지를 조성하여 자리 잡고 있다.

원래는 대둔사 속암 청련암(靑蓮庵) 자리이다. 서남쪽 약300m 지점에 대둔사 유지가 남아 있다. 1606년(선조 39)에 사명대사 유정이 중건하여 승군(僧軍)을 주둔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암자가 10여 개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웅전에는 전라 지역에 몇 점 있을 뿐 경북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귀한 유물인 ‘건칠 아미타여래좌상’²⁾이 봉안되어 있다.

이런 대둔사는 구미시의 대표적 사찰 중 하나로 이 지역의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 꼽히고 있다.

5. 연혁·유래 및 특징 : 대둔사는 신라 눌지왕 30년(446) 때 아도 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창건 후 고려 고종 18년(1231)에 몽고족의 침입으로 소실된 것을 충렬왕 때 왕자 왕소군(王小君)이 출가하여 중창하였다. 1606년(선조 39)에는 사명대사 유정이 중건하여 승군(僧軍)을 주둔시켰다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사찰이 쇠퇴하여 시왕전의 불상이 진주의 절로 옮겨가는 등의 수난을 겪었으며, 그 후 1958년 신도들의 시주로 정비가 이루어기도 했다. 1983년에 요사채를 신축하고, 1987년 대웅전 수리³⁾ 중 종도리 장허에서 상량문이 발견된 바 있다. 상량문에 의하여 광해군 6년(1614)부터 순조 4년(1804)까지 다섯 차례 수리⁴⁾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1999년과 2003년에도 수리와 근년의 여러 불사가 추진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다.

한편 500여년의 걸쳐 제작한 여러 종류의 명문과 문양 기와⁵⁾가 지붕에 남아

1)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2호(1982년 지정)

2) 보물 제1633호(2010년 지정)

3) 드잡이하고 부식부재 교체 후 번와보수

4) 1차(1614년), 2차(1622), 3차(1688년), 4차(1759년), 5차(1804년)

5) 1612년, 1615년, 1627년, 1686년, 1701년, 1766년, 1894년, 2003년에 제작한 연화문, 파문, 복합문, 인동

있는데, 아주 드문 사례이다.

동쪽에 나있는 경내로 올라서 남북으로 나란히 놓인 요사채 3채를 지나면 대웅전이 높은 석축 위에 큰 앞마당을 두고 동향으로 앉아 있다. 대웅전의 바로 우측에는 직교 배치한 명부전이, 좌측 뒤편 높은 곳에는 삼성각이 자리 잡고 있다. 대웅전 앞마당의 북쪽 조금 먼 거리에는 응진전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평면구성을 하고 겹처마 팔작지붕을 얹었다. 주간은 정·측면 모두 정칸이 협칸보다 간살이 넓다.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후열 평주선상의 뒤편 정칸에 고주를 세워 후불벽을 설치하고 그 앞에 불단을 안치했다. 전열 내주를 감주하고 고주를 세워 이주시킨 평면구성은 17~18세기의 건물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유형이다.⁶⁾ 불단 중앙에 주불인 아미타여래좌상을 봉안하고 좌·우 협시불 위치에 원패(願牌)와 경함(經函)을 앞뒤로 각각 2구씩을 두었다. 협시불 대신 의식장엄구를 배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예로 섬세한 목공예 기술이 돋보인다. 불단 위의 단집은 보궁형으로 하단에 연화봉을 단 네 개의 헛기둥을 풍련으로 장식하였다.

전저후고의 지형에 따라 전방에 석축이 높게 구축되어 있고 석축 가운데에 화강암 계단이 나있고 그 좌우로는 석축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기단은 장대석으로 쌓고 덩병 초석 위에 모두 원주를 세웠다.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팔각형 활주가 서 있다.

정칸에는 3분합굽널빛꽃살 여단이문을 달고, 양측 협칸에는 3분합굽널띠살 들어열개문을 달았다. 좌측면은 정칸에 3분합 굽널띠살여단이문이, 좌협칸에는 외여단이 띠살창이, 우협칸에는 외여단이 굽널띠살문이 달려 있다. 우측면은 좌협칸에만 외여단이 굽널띠살문을 내었다. 배면은 정칸에는 외여단이 굽널띠살문이, 우협칸에는 쌍여단이띠장널창이 설치되어 있다. 정면 가운데는 정칸의 위계를 고려하여 화려한 3분합굽널빛꽃살 여단이 문을 달고, 좌·우 협칸은 3분합굽널띠살 들문을 달았다. 정칸 문 윗틀에 남아 있는 돌쩌귀 흔적으로 보아 원래 들문

당초문, 선문, 문자가 새겨진 망와, 암·수막새, 암·수기와

6) 17~18세기 다포 팔작지붕 :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보물 제292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보물 제396호), 산청 울곡사 대웅전(보물 제374호) 등이 있음.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칸이 꽃살인 경우 좌·우 협간도 동일한 꽃살로 하든지 아니면 격을 낮춘 꽃살로 하는 예를 미루어 볼 때 그 살문양은 꽃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좌측면은 정칸에는 3분합굽널띠살 문을, 좌협간에는 외작띠살창을, 우협간에는 외작굽널띠살 문을 설치하였다. 우측면은 좌협간에만 외작굽널띠살 문이 나있다. 대체로 불전의 좌·우측면은 우측면처럼 구성하는데, 좌측면 개구부 전체에 창호를 설치한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드문 모습이다. 종교적 목적에 의한 것인지 채광이 유리한 남향이란 점을 고려한 것인지 잘 알 수 없지만 특이하다. 이 좌측면 정칸 윗 문틀에도 들문이었음을 읽게 하는 돌쩌귀 흔적이 남아 있다. 배면은 정칸에는 외작굽널띠살 문을, 우협간에는 띠장널영쌍창을 설치하고 좌협간은 창호를 달지 않았다. 우협간의 영쌍창은 18세기 이전 건물⁷⁾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고식이다. 불전 배면의 좌·우 협간 창호는 좌·우 동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 불전도 좌측 협간에 우측과 동일한 영쌍창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칸의 여닫이문의 동둔테는 주로 판장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색적이다. 정면의 꽃살 창호와 배면 영쌍창 이외의 창호는 부재의 풍화마모 상태와 의장적 상호성으로 보아 후대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공포는 시기적으로 앞선형인 내외출목수가 같은 내외4출목 다포형식이다. 주간포는 정·배면에는 2구씩, 양측면에는 정칸 2구, 협간 1구씩 배열되어 있다. 주간포 중 정·배·측면 양측 협간의 귀포 쪽으로 치우친 간포는 주두만 별도로 놓았을 뿐 귀포와 병침으로 연결되어 한 몸처럼 보인다. 이는 중국의 고대 사찰 건축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아주 희귀한 포작 수법으로 고식에 속한다. 구조적으로 하중을 많이 받는 귀포의 기능 충족과 함께 웅장함을 더해주는 독특한 모습으로 희소가치가 크다. 침차는 마구리 단부는 직절하고 그 밑면은 교두형으로 깎고 윗면에는 공간이 없다. 주심과 내·외출목의 대·중·소 침차로 구성된 모습이 정연하다. 살미는 4제공으로 외부살미는 동일한 분리형으로 하고, 내부살미

7) 영쌍창 :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 고려), 안동 봉정사 대웅전(보물 55호, 조선 초기) 등, 세로 벽선 :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보물 181호, 17세기 초), 청송 대전사 보광전(보물 1507호, 17세기 후반) 등

8) 선화사(善化寺)의 천왕전, 삼성전, 보현각, 대웅보전 : 창건 713~741년(당대), 중건 1123~1149년(금대) 중건. 현공사(현공사)의 종루 : 창건 471~523년(북위대), 청대 중건.

는 주심과 주간을 각각 분리형과 일체형으로 다르게 했다. 외부 살미의 1·2·3·4제공은 휘어 오른 양서형으로 그 마구리는 직절하였다. 정면의 4제공 위로는 운공, 배면의 4제공 위로는 주심과 주간에 각각 운공과 삼분두 및 운공, 양측면은 4제공 위로 운공과 3제공 위로 삼분두와 운공으로 조식되어 있다. 내부의 주심 살미는 1~3제공은 교두형으로 하고 그 위는 초각하였으며, 주간 살미는 모두 연봉·연화·봉두로 초각한 운공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내외부 살미의 모습은 17~18세기의 건물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⁹⁾ 주간포와 연결된 독특한 귀포는 이방 위에 귀한대는 외부 살미와 같은 양서형 1~4제공 상부에 연화와 용두형으로 조식하였다. 좌우대는 교두형과 양서형이 교대로 이루어져 있고, 출목은 도매침과 병침으로 짜 맞추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다포계에서 i)내외출목수가 같은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시기적으로 선행하고, ii)외부 살미는 교두형-쇠서형-초각쇠서형-연화쇠서형으로, iii)내부 살미는 교두형-초각형-연화쇠서형으로 일체화되며, iv)귀포는 교두형-쇠서형(초각형)-연화쇠서형으로 변화되면서 장식성이 점차 강해지는 대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 건물의 현재 양상은 장식성이 강해지기 이전인 17~18세기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부가구는 5량 가로 대량 위에 동자주익공을 끼운 동자형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받게 하고, 종보 위에 제형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지지하도록 하였다. 총량은 측면 평주의 주상포 위에 뿌리를 얹고 대량의 상부에 머리를 얹었다. 총량 위에는 방형 판대공이 외기틀을 받고 있다. 내4출목 위의 장여와 내목도리 사이에는 내벽을 설치하였다. 내벽 위의 내목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설치한 빗반자와 중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꾸민 우물반자의 장엄이 수려하다.

단청은 전체적으로 모로 단청을 시채 하였는데, 여러 가지 뜻을 담은 보기 드문 조선 중기 문양이 남아있다.

옥개부는 겹처마 팔작지붕인데, 부연 중에는 하부가 좁고 운두가 낮은 고식이 일부 남아 있고 추녀 마구리에는 풍경이 달려 있다.

6.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대둔사 대웅전은 17~18세기 다포 팔작건물의 특

9) 부안 개암사 대웅전(보물 292호, 17~18세기), 구례 화엄사 대웅전(보물 299호, 17~18세기) 등이 유사하다.

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면구성, 특유의 공포 포작 수법과 개구부구성, 고식 창호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귀포 구성은 독보적인 모습으로 건축양식사적 회소가치가 매우 크다.

17~18세기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대둔사는 기존의 보물 사찰 건축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보물로 지정하였으면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6.06.22	대상문화재	구미 대둔사 대웅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보물		
	문화재 명칭	구미 대둔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6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미 대둔사 대웅전 보물지정 현장조사 의견서

1. 문화재명 : 구미 대둔사 대웅전

2.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산촌옥관로 691-78

3. 창건과 변천

대둔사는 신라 눌지왕 30년에 신라 최초의 사찰인 도리사를 지은 아도화상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고려 몽고전쟁으로 불탔으며 다시 세웠으나 임진왜란으로 다시 소실되어 1606년 사명대사가 규모를 확대하여 다시 지었다고 한다. 건축양식이나 유적으로 미루어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지은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의 대웅전이 언제 지어진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웅전은 1982년 8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162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안에 모셔진 아미타여래좌상은 2010년 보물1633호로 지정되었다. 아미타좌상은 수인은 중품하생에 법의는 통견의와 균의를 착용하고 있다. 얼굴과 다리에 비해 어깨가 좁고 상체가 약간 앞으로 쏠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X-ray 촬영결과 상호와 불신은 건칠로 제작되었고 양손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불상의 조성연대는 조선전기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상의 조성연대는 현재의 대웅전 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웅전 내부에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아미타회상도와 괘불함이 있으며 광복이후의 신중도와 동종, 시대를 알 수 없는 원패와 경장, 대웅전의 편액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건물보다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다. 불상은 아미타불인데 금당의 명칭은 석가를 모신 대웅전이라고 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아미타불은 조선전기의 것으로 처음에는 극락전이었는데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1606년 복구되는 과정에서 대웅전으로 바뀌었을 개연성이 있다.

지붕의 망와에는 건륭31년 병술(1766)이라고 기록한 망와가 다수 남아 있어서 최소 1766년 이전에는 대웅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1766년 제작 망와



그림2. 일제강점기 제작 현판

4. 건축구조 및 양식

대둔사 대웅전은 정면3칸, 측면3칸으로 2평주5량가이다. 측면에는 전후퇴에 기둥이 있어 3칸을 이루고 있으나 내부는 감주법에 따라 기둥을 생략한 통보구조이다. 다만 불단 양쪽에는 기둥이 서 있으나 불단을 꾸미기 위한 보조기둥으로 구조기둥은 아니다. 장대석 기단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은 원기둥이며 기둥머리에서는 창방이 양갈로 맞춤되었으며 그 위에는 평방을 놓고 공포를 올렸다.

공포는 외4출목의 9포집으로 공포가 대단히 화려하고 장식적이다. 제공은 4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쇠서가 길고 빠짐이 넉넉하며 처짐 정도가 고식기법을 사용하였다. 익공은 연화형이며 맨 위 두공은 연화형으로 다른 대표형식의 공포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이다. 첨차는 교두형이지만 그 곡이 사선에 가까워 강직한 맛을 느끼게 한다. 비교적 첨차가 짧고 폭이 두껍고 장식이 배제되어 있어서 섬세한 화려미 보다는 강직성이 엿보이는 건장한 화려미가 돋보이는 형식이다.

중앙 정칸의 간포는 2개를 배열했지만 양쪽 퇴칸에는 하나만 배치하고 귀포의 좌우대를 길게 빼 도리를 받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포간격이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이 특징적이다. 주간포에서도 주심첨차를 길게 하고 상부는 통장혀를 사용해 포벽을 최소화 한 것이 다른 건물에서는 보기 드문 형식이다.

귀포의 경우는 쇠서형으로 귀한대와 좌우대로 구성했으나 그 사이에 교두형으로 짧은 좌우대를 배치했다는 것이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또 맨

가의 좌우대를 병침을 길게 빼서 따로 주두를 놓고 그 위에 구성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다른 다포형식의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로 추정된다.



그림3.대둔사 대웅전 전경



그림4.대웅전 비대칭 배열의 공포



그림5.주심첨차의 길이가 매우 긴 것이 특징



그림6.병침의 길이를 늘려 좌우대가 간포역할

창호는 정칸에는 꽃살을 달았는데 3칸 중에서 가운데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좌우는 후대에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배면은 3칸 모두에 판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가운데는 세살문이고 한쪽 협칸에만 판문이 남아 있다. 내부의 우물반자와 빗천장이 장식적인데 우물반자는 다란을 운문으로 장식화하였다. 단청은 직회가 많지 않은 고식기법으로 추정된다.

5. 지정가치

- 대둔사 대웅전은 건축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 직후인 1606년으로 추정된다. 지정을 위한 시대적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망와에는 1766년에 제작된 명문이 남아 있어 가치를 갖고 있다. 내부의 아미타좌상은 조선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건물과 함께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 대웅전은 다포형식이지만 다른 건물의 다포형식에서는 볼 수 없는 거의 유일한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출목에 사용된 첩차보다 주심첩차가 매우 길게 처리되었다는 점과 귀포에서 마지막 좌우대를 병첨에 의해 길게 빼고 별도로 주두를 받쳐 간포역할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포는 많지만 이러한 형식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것하나만으로도 희소성의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재지정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창호의 일부가 변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건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공포형식과 내부 장엄 등에서 희소성 및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최종 판단된다.

2.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탑비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재심의)

가. 제안사항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곡성군 소재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곡성군 소재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8.17) : 조건부가결
 - 탑, 탑비를 옮기지 않는 상태에서 담장 설치 및 수목 제거, 배수체계 등을 정비토록 함
 - 보존처리는 시행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 소재지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산18-1
 - 지정일 : 1963. 01. 21.
- (2) 사업내용
 - 사업범위 :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탑비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탑 및 탑비(비신 포함)에 대하여 보존처리를 시행하고, 문화재 보존환경 개선을 위한 주변정비(담장 설치, 수목제거, 배수체계 정비 등)를 실시한다.

○ 주요내용

- 보존처리[광자대사탑 및 탑비(귀부, 이수, 비신)]
 - 표면세척 : 44.64m²(오염도 80% 이상)
 - 발수경화처리 : 44.64m²
- 석축배수로담장 및 주변 정비
 - 부도군 석단 및 배수로, 담장조성, 상부면 마사토 다짐
 - 자연석 석축
 - 담장하부석축 : H=0.29m, L=36.0m(기와 돌각담장 하부) /
H=0.79m, L=37.0m(돌각담장 하부)
 - 기존석축해체 : H=0.85m, L=21.5m(해체석재 100% 재사용)
 - 기와 돌각담장 : H=0.75m, L=49.0m
 - 돌각담장 : H=0.5m, L=35.5m
 - 자연석 배수로 : 1.0x0.3m, L=42.0m
 - 자연석 계단 : W=1.5m, H=0.8m 1개소
 - 마사토 다짐 : T=0.1m, A=280.50m²
 - 기존 부도비 8기 이설
 - 주변 난간 철거 및 수목 5주 굴취(제거)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2017.05.)

- 석조물의 보존현상(물리적, 구조적, 훼손상태, 이전보수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훼손지도를 작성하여 보존처리에 반영하도록 함
- 석조물의 표면에 지의류와 선대류 등이 번식하여 석재 표면을 침식하고 있으므로 지의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건식세척과 습식세척을 병행하여 보존처리 함
- 부도 주변 경사면 등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로 인하여 부도전내에 상당량의 토사가 적치되어 있으므로 주변 석단 및 배수로 등을 마련하여 토사물이나 빗물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함
- 부도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수목은 제거하여 부산물로 인해 석조유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

- 부도전내에는 근래에 조성된 부도가 혼재되어 있어 위계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 이에 광자대사탑과 기타 부도간의 위계 등을 바로 잡아 정비하도록 함
- 부도 주변은 마사토를 깔아 식생식물 등이 자라지 못하도록 함. 단, 지면은 자연 구배를 주어 배수가 원활하도록 함
- 모든 처리과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시행하고 전 과정을 보고서에 수록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탑, 탑비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담장 설치, 주변정비 등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3. 서울 흥인지문 성벽 보존처리(오염물질 세척)

가. 제안사항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흥인지문」 성벽 보존처리(오염물질 세척) 사업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흥인지문」 성벽 보존처리(오염물질 세척) 사업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서울 흥인지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 지정일 : 1963. 01. 21.
- (2) 사업내용
 - 사업범위 : 서울 흥인지문 성벽 보존처리(오염물질 세척)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성벽 오염물질을 세척한다.
 - 주요내용
 - 보존처리(서울 흥인지문 체성 및 옹성)
 - 건식세척(체성=496.96m², 옹성=674.60m²)
 - 습식세척(체성=351.60m², 옹성=498.20m²)
 - 균열부 수지처리(40cm²)
 - 강화처리(127.47m²)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 ○ ○ ○ (2017.08.01. / ○ ○ 대학교 교수)

- 용성, 체성부분 오염물질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따라 세척방법 및 정도를 결정하도록 함.
- 문루 목재부위의 세척은 건식 세척 후 아교 포수를 하도록 함.
- 건축철물의 오염물은 세척 후 방청처리를 실시하도록 함.
- 홍예개판의 청룡도는 건식 세척 후 아교포수를 2회 정도 실시. 그 후 고색 단청을 결정함.
- 홍예문의 오염물은 건식세척을 실시한 후 훼손부위에 대한 주철여부는 자문을 통해 결정함.
- 홍예문 후면의 흙은 제거한 후 필요에 따라 세제를 사용하여 마감 처리함
- 가설은 최소한으로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 석재 세척 범위는 시공 전 자문을 통해 방법 및 세척정도를 결정함

○ ○ ○ ○ (2017.10.26. / ○ ○ 시 문화재위원)

- 성벽의 흑화물질은 원형이 아니므로 제거하되 홍인지문의 역사적 이미지가 유지되도록 지나친 세척은 금하며, 현재 용성 상단의 색채를 기준으로 작업함.
- 성벽의 석질이 불량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강화처리함.
- 대문은 먼지제거 수준으로 보존처리를 하되 하단부 3개소 망실부분은 원형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덜렁거리는 부분은 접착제로 대문에 밀착시키도록 함.
- 대문 안쪽의 손잡이는 조치가능 범위까지 보존처리 함.
- 홍예문 천정의 청룡, 백룡도는 88올림픽 때 현대 재료를 채색한 것이므로 재료에 맞게 박락막기 조치를 취함.
- 건축 철물에 발생한 사마귀녹을 부드럽게 제거한 후 표면 보호막 처리를 함. 이때 Povaloide B72 10%등의 재료로 검토함.
- 건축 철물은 부식상태에 따라 선별 허가 처리.

- 건축 목부 먼지제거는 단청이 훼손되지 않도록 에어 컴프레서 사용을 지양하고 브러쉬 등의 수작업 위주로 시행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샘플링을 통과한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4. 서울 살곶이 다리 원형복구 및 보수공사(재심의)

가. 제안사항

‘14~’15년,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소재 보물 「서울 살곶이 다리」 원형복구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4~’15년, ‘17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소재 보물 「서울 살곶이 다리」 원형복구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15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15.05.21) : 보류
 - 자전거도로 확보방안 강구
 - 도로 이설 및 차수관거정비 등 서울시와 업무협약의 선행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서울 살곶이 다리
 - 소재지 : 서울 성동구 행당동 58
 - 지정일 : 2011. 12. 23.
- (2) 사업내용
 - 사업범위 : 서울 살곶이 다리 및 인접 구역(하천변 및 자전거 도로 일부 포함)
 - 사업지침
 - 2015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살곶이 다리를 원형복구 및 보수한다.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발굴조사 결과 절단되어 노출된 다리 부재 해체·보관 및 해체부에 대한 보강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한다.

- 살곶이 다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

○ 주요내용

- 살곶이 다리 원형복구 및 보수

- 긴급해체한 석재 재설치(청판석 13개)
- 파손된 귀틀석 신재 교체(3개소)
- 귀틀석 교체에 따른 석재 해체 후 재설치(청판석 9개)
- 임시보수(목재)구간 청판석 신재보충(2개)
- 파손된 청판석 보존처리(수리접합) 실시(7개)
- 균열이 발생한 명에석 보존처리(석재충진) 실시(1개)
- 오염물이 침착된 청판석 및 귀틀석 세척
- 북측교대 동,서 날개벽 해체 후 재설치

- 주변정비

- 살곶이 다리를 우회하는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설치(총 80m)
- 조망공간 조성(목재데크 설치, 벤치설치, 조경석 설치)
- 문화재 안내판 설치(1개소)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조명등, 점멸등, 안내판, 벽보호매트)
- 우수집수정 설치(2개소)
- 보강토 옹벽 설치(총 25m)

라. 구조안전진단 결과 (2017. 6. ~ 9.)

-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균중하중을 고려할 경우 지반침하량을 계산한 결과 균중하중에 의한 변위는 거의 영향이 없음
- 지반은 교량을 지지하기에 부족함이 없음. 다만 차량의 통행은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의 변위 상태가 유지된다면 구조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단, 명에석 중 기울기가 심한 14개 부재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마.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 ○ ○ ○ (2017.10.26. / 문화재위원)

- 발굴된 부분의 파손된 청판석(7개)은 수지접합하여 재사용하고, 절단된 귀틀석(3개)은 신재로 교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장함.
- 마름모꼴로 배치된 교각 5개소는 현황대로 존치하고 추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 신설될 자전거-인도부분을 호안석 마감하면 북측 다리부와 간선될 우려가 있고, 인접한 조경석이 빠질 경우 다리부에 위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 옹벽처리하고 그 위로 떠 있는 도로를 개설함이 합리적으로 보임.

○ ○ ○ ○ (2017.10.23. / 문화재위원)

- 새로이 발굴한 교대부분의 복원공사는 과거 기록물과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관리부서에 보고하도록 함.
- 시민의 하천 공원의 자전거 통로 및 보행통로의 설치는 급격한 경사 및 회전을 최대한 피해야 함. 특히, 자전거 통로는 주행속도를 보행속도 수준으로 낮추도록 접근거리에 따라 주의 및 물리적인 장치를 설치함.
- 자전거도로의 야간 주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명 및 시야 그리고 충돌위험고지를 해야 함.
- 보행로는 살곶이 다리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며 자전거 통행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접근 각도 및 경사도를 설계하여야 함.
- 현재 살곶이 다리가 자전거통로보다 낮아 이를 완만한 경사로가 되도록 주변을 정비해야 함.
- 살곶이 다리의 현재 파손된 부재의 보강은 일반인 보행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강재의 개수 및 위치를 확인 산정하여 보강함.
- 홍수 발생시 유수로 인한 퇴적물의 발생을 고려하여 해당 관리부에서는 처리 및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시행.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5.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 지장전 건립(5차)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보물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에 지장전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지장전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전통한옥에 한하여 최고높이 7.5m(1층) 이하”에 해당됨.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5.18)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전통경관이 최대한 보존 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필요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8.01) : 부결
 - 지형 훼손 및 역사문화 경관 저해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9.21)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10.19) : 조건부 가결
 -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를 보완한 후 시행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마애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산13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1031-2, 1030, 1029-1, 1031-3, 산139-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82m
- 사업내용 : 지장전 건립

구 분	1차 (‘17.05 / 부결)	2차 (‘17.08 / 부결)	3차 (‘17.09 / 부결)	4차 (‘17.10 / 조건부가결)	금차
건축면적 (연면적)	105.96㎡ (3,349.72㎡)	105.96㎡ (2,975.03㎡)	좌동	105.96㎡ (2,074.96㎡)	205.20㎡ (3,164.49㎡)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층수	지하 3층 지상 2층	지하 3층 지상 1층	좌동	지하 2층 지상 1층	지하 3층 지상 1층
높이	11.0~23.1m	8.3~20.4m	좌동	8.3~16.6m	8.5~16.1m
기타	-	-	- 전면 노출 면에 대나 무 식재 - 옥상 잔디 블록 시공	좌동	좌동

라. 의결사항

- 부결
 - 규모 과대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6. 고성 육송정 흥교 주변 발전시설(태양광 발전)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 고성군 소재 보물 「고성 육송정 흥교」 주변에 발전시설(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발전시설(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보고결과(2017.10.19) : 원안접수
 - 자체검토회의 결과 : 불허(역사문화 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고성 육송정 흥교
 - 소재지 :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41번지
 - 지정일 : 2002. 02. 0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903, 908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4m
 - 사업내용 : 발전시설(태양광 발전) 설치

구 분	1차(‘17.10 / 불허)	금차
사업면적	6,720m ²	5,409m ²

구 분	1차('17.10 / 불허)	금차
태양전지판	규격 : 1.64×0.98m 수량 : 1,716개	규격 : 1.64×0.98m 수량 : 1,450개
구조물 높이	2.68m	좌동
성·절토	성토 : 549m ³ 절토 : 12,778m ³ (최대 높이 : 5.3m)	성토 : 950m ³ 절토 : 4,625m ³ (최대 높이 : 2.4m)
기타	-	경계휨스 280m(높이 : 1.5m), 차폐림 보전계획

라. 의결사항

- 부결
 - 지형변경 및 시설물 규모 과대
 - 문화재 진입부 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7.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남산공원 경관시설 설치(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남산공원 경관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남산공원 경관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9.21)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1 외 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90m
 - 사업내용

구분	1차 ('17.09 / 부결)	2차	비고
L형옹벽	L=35.00m, H=5.50~3.00m	L=35.00m, H=2.00m	

구분	1차 ('17.09 / 부결)	2차	비 고
조경석 쌓기	-	3단, L=40.00m	
산책로 데크	L=210.5m, B=2.0m (신설 L=165m, 개체 L=45.5m)	L=115.5m, B=2.0m (신설 L=107m, 개체 L=8.5m)	
인도(보 도블록) 재포장	L=88.50m, B=4.60~3.00m	L=89.00m, B=4.25~2.65m	
잡목제거	아카시아 외 2종(A=894m ²)	아카시아 외 2종(A=1,038m ²)	
조경식재	-	연산홍 H=0.3×W0.4, 670주 홍단풍 H2.0×R6, 14주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옹벽 높이 축소
 - 조경석 쌓기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8.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변 석교 및 석축 설치(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변에 석교 및 석축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석교 및 석축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8.01.) : 부결
 - 간결한 형태의 목교, 평석교 등 다른 계획안을 검토하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 : 안동 봉정사 극락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222, 봉정사(태장리)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1074 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임

○ 사업내용 : 석교 및 석축 설치

구분	1차 (17.08 / 부결) 한식 홍예석교	2차			비 고
		1안	2안	3안	
		한식 화강석 홍예석교	평석교	한식 자연석 홍예석교	
석교	R=8.4m B=4m L=14m H=4.2m 관로매설구역 L=101m	R=8.4m B=4m L=14m H=4.2m	B=4.2m L=17.64m H=4.2m	R=8.4m B=3.5m L=14m H=4.2m	
석축	1단 자연석 석축 H=2.7m, L=50m 2단 자연석 석축 H=2.7m, L=35.8m	1단 자연석 석축 H=2.7m, L=60.6m 2단 자연석 석축 H=2.7m, L=25.2m	좌동	좌동	
낙차 보	상단 낙차보 H=1.0m, L=8m 하단 낙차보 H=1.0m, L=12.5m	상단 낙차보 4단 H=1.0m, L=8.4m 하단 낙차보 4단 H=1.0m, L=12.1m	좌동	좌동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3안으로 시행하되 교량 내부 폭은 2.5m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9.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연미사 산신각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에 연미사 산신각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연미사 산신각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9.21.) : 부결
 - 역사문화 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미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이천동 산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이천동 707, 산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m

○ 사업내용 : 산신각 신축

구분	1차('17.09 / 부결)			2차	비 고
	요사채1	요사채2	산신각	산신각	
건축면적	29.33m ²	97.91m ²	7.43m ²	7.43m ²	
구조	컨테이너 위 철골조	조적조 및 철골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층수	지상1층	지상1층	지상1층	지상1층	
최고 높이	3.98m	6.55m	4.82m	4.82m	
양식 (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라. 의결사항

- 부결
 - 신축 건물이 문화재와 가까워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0. 문경 봉암사 극락전 주변 종교시설(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문경시 소재 보물 「문경 봉암사 극락전」주변에 종교시설(창고)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종교시설(창고)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봉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문경 봉암사 극락전
 - 소재지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길313
 - 지정일 : 2008.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77-2번지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4m
 - 사업내용 : 종교시설(창고) 신축

구분	주1동	부1동	비고
연면적	183.6㎡	7.29㎡	
구조	철골구조	목구조	

구분	주1동	부1동	비고
층수	1층	1층	
높이	5.2m	3m	
지붕	판넬	판넬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1.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정법궁 철거 후 신축(2차)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보물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에 정법궁(대웅전)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정법궁(대웅전)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11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10.20.)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와 동수 등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개태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08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2614-1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정법궁(대웅전) 철거 후 개축

구분	1차 ('11.10 / 부결)				2차	비고
	정천궁	종각	사천왕문	법당	정법궁(대웅전)	
건축면적	35.19m ²	12.96m ²	46.98m ²	110.88m ²	110.88m ²	
구조 (한식 목구조)	이익공	이익공	이익공	다포	다포	
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층수 및 높이	지상1층 / 8.860m	지상1층 / 7.770m	지상1층 / 7.571m	지상1층 / 9.492m	지상1층 / 11.186m	
특이사항	용화전(23.14m ²), 정법궁(53.9m ²) 철거예정					

라. 의결사항

- 부결
 - 건물의 위치와 규모 부적정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2.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보물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주변에 템플스테이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템플스테이를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내소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내소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7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건립(3동)
 - 1동
 - 건축면적(연면적) : 158.00㎡(158.00㎡)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6.62m

- 2동, 3동(동일)
 - 건축면적(연면적) : 90.00m²(90.00m²)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6.62m
- 기타
 - 기존 자연석 해체보수(L=38m, H=2m / 부지 일부 절토)
 - 도로포장(L=100m / 콘크리트 포장)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문가 자문을 받아 건물의 규모 및 배치 조정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13.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주변 근생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보물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주변에 근생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생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금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산2-1
 - 지정일 : 1988. 04. 0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2m
 - 사업내용 : 근생시설(소매점) 건립
 - 사업부지면적 : 459㎡
 - 건축면적(연면적) : 27.00㎡(27.00㎡)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 5.86m

라. 의결사항

- 부결
 - 위치 재검토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6명, 원안가결 1명

14.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창고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국보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에 창고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창고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1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84-1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40m
 - 사업내용 : 창고시설 건립
 - 사업부지면적 : 330㎡
 - 건축면적(연면적) : 120.90㎡(120.90㎡)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 6.6m

라. 의결사항

- 부결
 - 진입부 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6명, 원안가결 1명

15.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건립(2차)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보물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8.17)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46-3
 - 지정일 : 1969. 07. 1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64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6m

○ 사업내용 : 단독주택(3동) 건립

구분	1차('17.08 / 부결)	금차
사업부지면적	2,650m ²	좌동
동수	단독주택 3동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309.60m ² (302.04m ²) ※각 동별 : 103.20m ² (100.68m ²)	좌동
건축구조	조적조	좌동
층수 및 최고높이	지상 1층 / 5.95m	지상 1층 / 4.95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 색채 저채도, 차폐 식재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5명, 원안가결 2명

16.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진입로 확·포장(2차)

가. 제안사항

경기 안성시 소재 보물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에 진입로 확·포장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진입로 확·포장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보호구역 내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7.09.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성시장
- (2) 대상문화재 : 안성 석남사 영산전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석남사
 - 지정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25-1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석남사 진입로 확·포장

구분	1차('17.09 / 부결)	금차
사업규모	L=930m, B=9m(아스콘 포장)	L=100m, B=9m(아스콘 포장) L=565m, B=7m(아스콘 포장)
토공	흙깎기, 흙쌓기	좌동
배수공	L형측구(900m), 산마루측구(500m), 배수관, 집수정 설치	좌동
구조물공	식생옹벽블록(700m ²), 암거 2개소(5.0×2.0, 30m, 40m)	식생옹벽블록(400m ²), L형옹벽(H=1.2m, 30m) 암거 1개소(5.0×2.0, 10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17.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관광농원 조성(허가사항 변경, 3차)

가. 제안사항

충북 단양군 소재 보물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2.18) : 월안가결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허가사항 변경 심의결과(2017.02.16)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 ‘17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허가사항 변경 심의결과(2017.03.16)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석축 형태 조정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471-11
 - 지정일 : 1964.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503-9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300m

○ 사업내용 : 관광농원 조성

구분	당초	변경	1차('17.02.16 / 부결)	2차('17.03.16 / 조건부가결)	금차
영농 체험 시설	○ 부지면적 : 2,048㎡ - 버섯재배, 곤충체험장	○ 부지면적 : 2,048㎡ - 버섯재배, 곤충체험장	○ 부지면적 : 2,118㎡ - 버섯재배, 곤충체험장, 약용식물 재배	좌동	좌동
캠핑장	○ 부지면적 : 3,957㎡(카라반 제외)	○ 부지면적 : 3,832㎡(카라반 제외)	○ 부지면적 : 3,510㎡(카라반 제외) - 데크 설치	좌동	좌동
판매실 / 관리실	○ 부지면적 : 990㎡ - 건축(연면적) : 99.9㎡(99.9㎡) - 구조, 층수 : 철골구조, 지상1층(4.95m)	○ 부지면적 : 1,089㎡ (카라반 7대) - 건축(연면적) : 99.9㎡(99.9㎡) - 구조, 층수 : 철골구조, 지상1층(4.95m)	○ 부지면적 : 1,123㎡ (카라반 7대) - 건축(연면적) : 72.45㎡(72.45㎡) - 구조, 층수 : 철골구조, 지상1층(6m)	좌동	좌동
기타		○ 산책로(도보이동) 조성(470㎡) ○ 판매실/관리실 위치 이동(약 13m) ○ 판매실/관리실 구역 주변 자연석 석축 쌓기(1m~3m) 및 옹벽 설치(1m) ※ 진입도로부지 : 587㎡	○ 통행로(차량이동) 조성(801㎡) ○ 판매실/관리실 구역 주변 자연석 석축 쌓기(0.5m~3m) ○ 도로변 성토 및 2단 자연석 쌓기(H=최대 약 6m) ※ 진입도로부지 : 620㎡	○ 통행로(차량이동) 조성(801㎡) ○ 판매실/관리실 구역 주변 자연석 석축 쌓기(0.5m~3m) ○ 도로변 성토 및 2단 자연석 쌓기(H=최대 약 5m) ※ 진입도로부지 : 620㎡	좌동 ※ 도로변 2단 자연석 쌓기 구역 범면 차폐식재

※ 금회 신청 주요 변경 사항 : 도로변 자연석 석축 쌓기 구역 범면 차폐식재

라. 현지조사 의견('17.10.11)

- 신청부지는 남한강로를 통해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에 접근하는 진입부에 해당되는 위치로, 관광농원 부지의 석축은 문화재 진입부 경관을 저해하므로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 차폐토록 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전문가 자문의견인 녹화공법으로 진입부 경관저해 완화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8.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보물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7년 건축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2017.09.21.)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7.10.01~'17.10.30) 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함안군수
- (2) 대상문화재 :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39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 기존 보호구역 :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39번지 일원 886㎡
 - 변경 보호구역 :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39번지 일원 4,414㎡(3,528㎡ 증가)

소재지	기 보호구역 지정 면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면적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2	889	886	7	3,904	3,528	9	4,793	4,414

(4) 신청사유

- 보호구역 확대로 당해 문화재 경관 보호

라. 지방자치단체(함안군) 의견

- 대산리 석조삼존상 서쪽으로 일부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남쪽과 북쪽, 동쪽으로는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고 1구역(개별심의)으로 설정되어 있음. 특히 남쪽지역은 삼존불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삼존불 경관에 핵심적 공간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나 지목상 대지로 설정되어 향후 침해한 민원이 예상됨.
- 또한, 동쪽에 위치한 대산리 1138-3번지 및 1137-2번지는 폐사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삼존불과 연관성이 극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현재 경작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파괴가 우려되는 실정임.
- 따라서,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예상되고 해당 토지 소유주 역시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바, 보호구역지정을 통해 석조삼존상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현지조사의견('17.08.10)

- 신청부지는 석조삼존상의 주변 지역으로 사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편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존상의 전면과 측면에 해당되는 위치이므로 유적보호와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바.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보호구역 (m ²)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1137-2	전	1,005	1,005	○○○	함안군	
2		1138-3	전	896	896	○○○ 외1	함안군	
3		1140-3	대	268	268	○○○	서울시	
4		1140-6	대	410	410	○○○	함안군	
5		1140-16	대	1,247	871	○○○ 외1	창원시	
6		1141-11	대	35	35	○○○	서울시	
7		1209-9	구	43	43	○○○	서울시	
계				3,904	3,528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변경 전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이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변경 후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이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1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6년, 2017년 건축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검토를 거쳐 예고기간 동안 별도의견이 없던 건의 허용기준 조정(안)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399호, '16.04.29) 개정 등을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 향후 계획

- 건축분과문화재위원회 심의('17.11.16.) 후 결과에 따라 관보에 고시

(3) 대상 문화재 (15건)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충남	보물	18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2	전북	보물	45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3	전남	보물	49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4	충남	보물	150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5	충남	보물	184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6	충남	보물	219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7	충남	보물	399	홍성 고산사 대웅전
8	경북	보물	492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9	광주	보물	600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10	경북	보물	681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11	경북	보물	790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12	경북	보물	995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13	경북	보물	1121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4	서울	보물	1738	서울 살곶이 다리
15	충남	보물	1746	논산 노강서원 강당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내용

[붙임]

1.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18호
- 소재 지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6-2번지
- 지정 일 : 1963.01.21.

나. 검토의견

- 현행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설정된 1구역을 개별심의지역으로 변경

01.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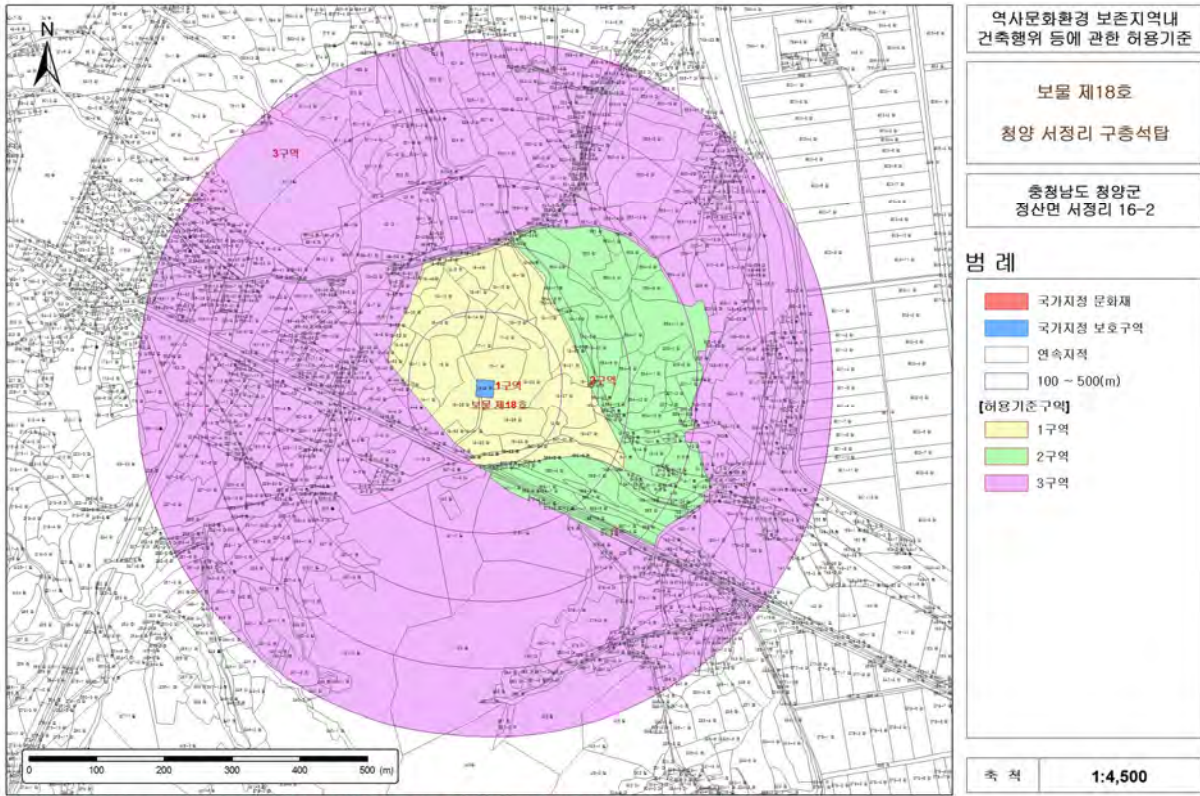
【 당 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p>○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변 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변 경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2.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45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273 (연동리)
- 지정 일 : 1963.01.21.

나. 검토의견

- 현행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설정된 1구역을 개별심의지역으로 변경

02. 보물 제45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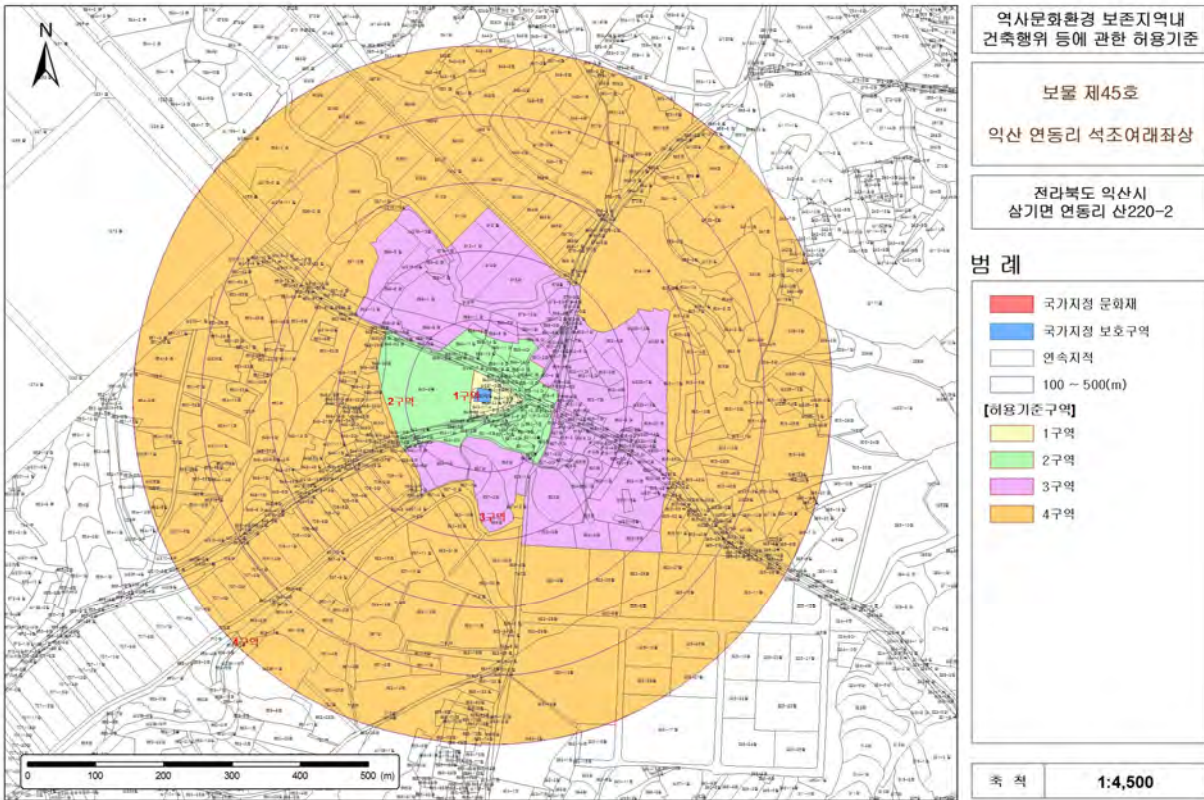
【 당 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제3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변 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변 경 】



3.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49호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번지
- 지정 일 : 1963.01.21.

나. 검토의견

- 현행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설정된 1구역을 개별심의지역으로 변경
- 보호구역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지역은 국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지역으로 신설
- 추가된 보호구역 인접지역은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허용지역으로 신설하고, 현행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가운데 전담지역은 2구역으로 통일'
-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자체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200미터 까지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므로 건축행위 허용기준범위에서 제외

03. 보물 제49호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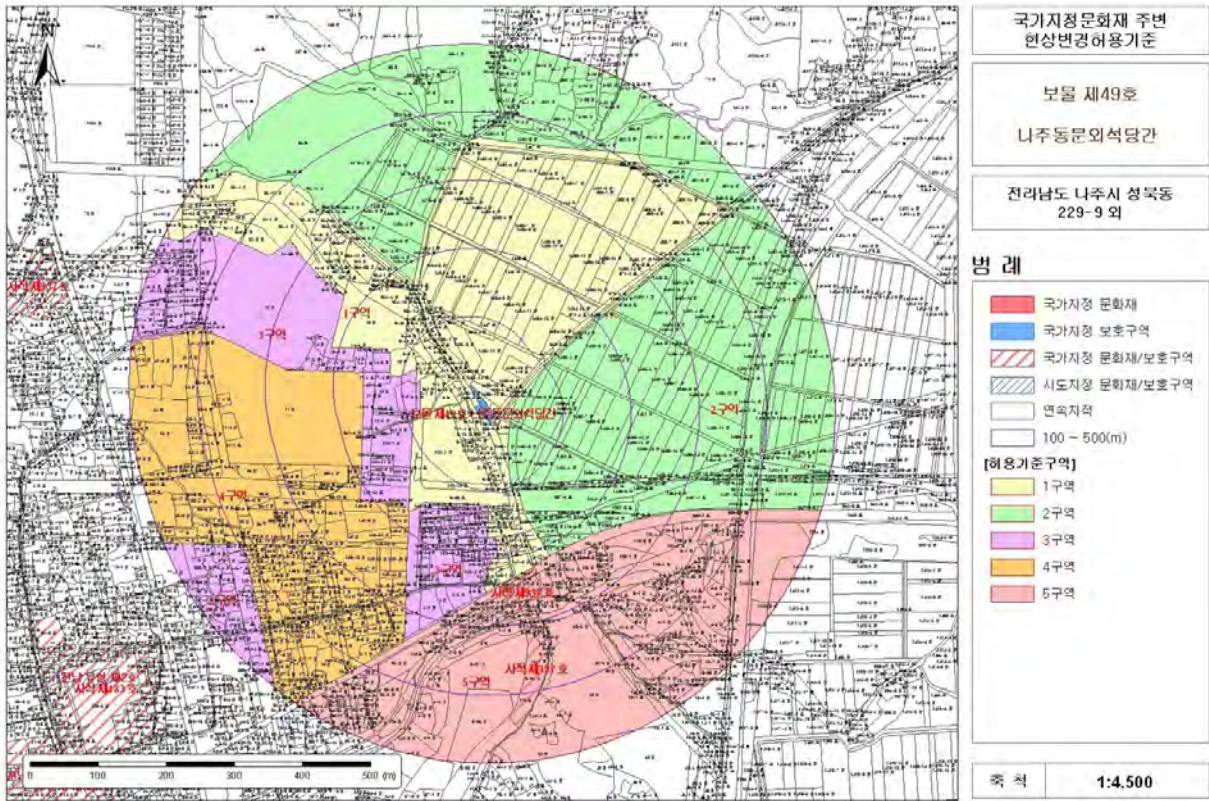
【 당 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5구역	○ 사적 제347호 “나주읍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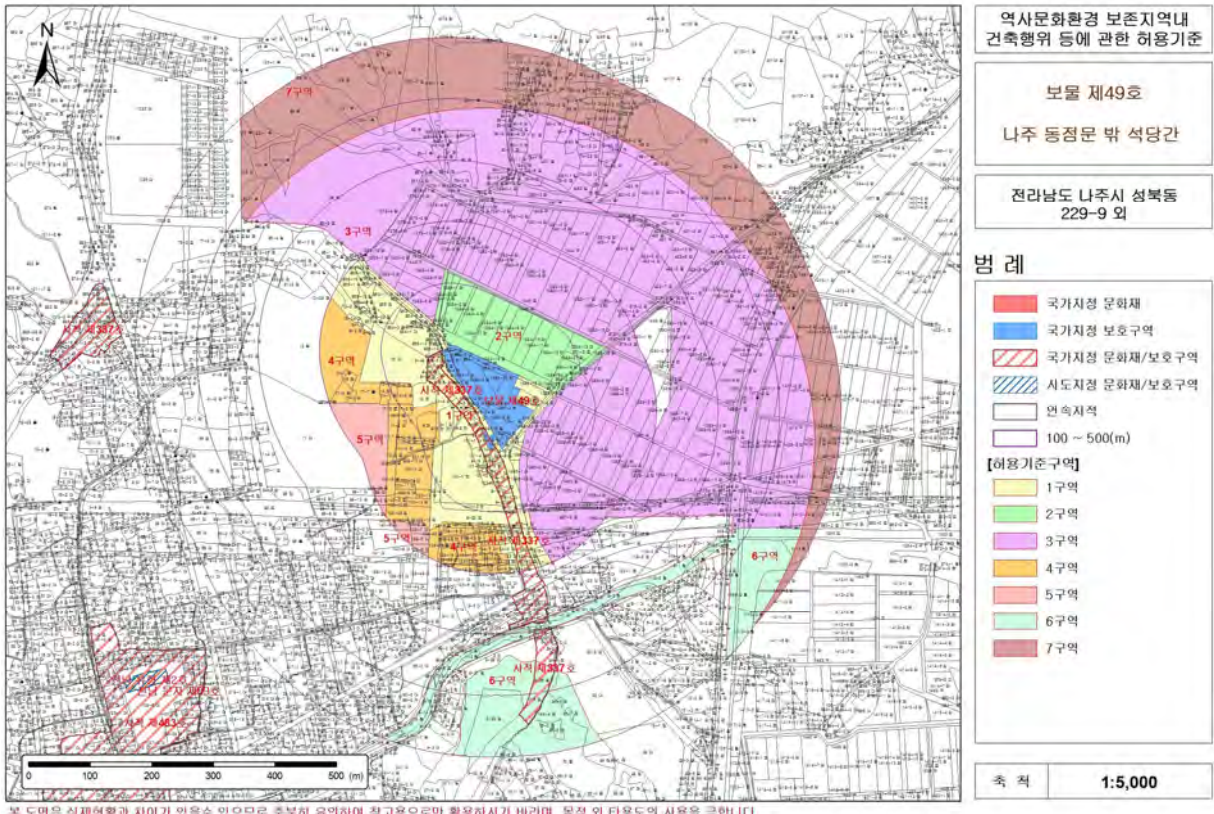
【 변 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제6구역	○ 사적 제347호 “나주읍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따름		
제7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 변경 】



4.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150호
- 소재 지 : 충남 공주시 반죽동 302-2번지
- 지정 일 : 1963.01.21.

나. 검토의견

- 당간지주 주변 지역은 기도심화가 진행되어 있으므로 인접지역보다 이격된 지역을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하는 지역으로 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04. 보물 제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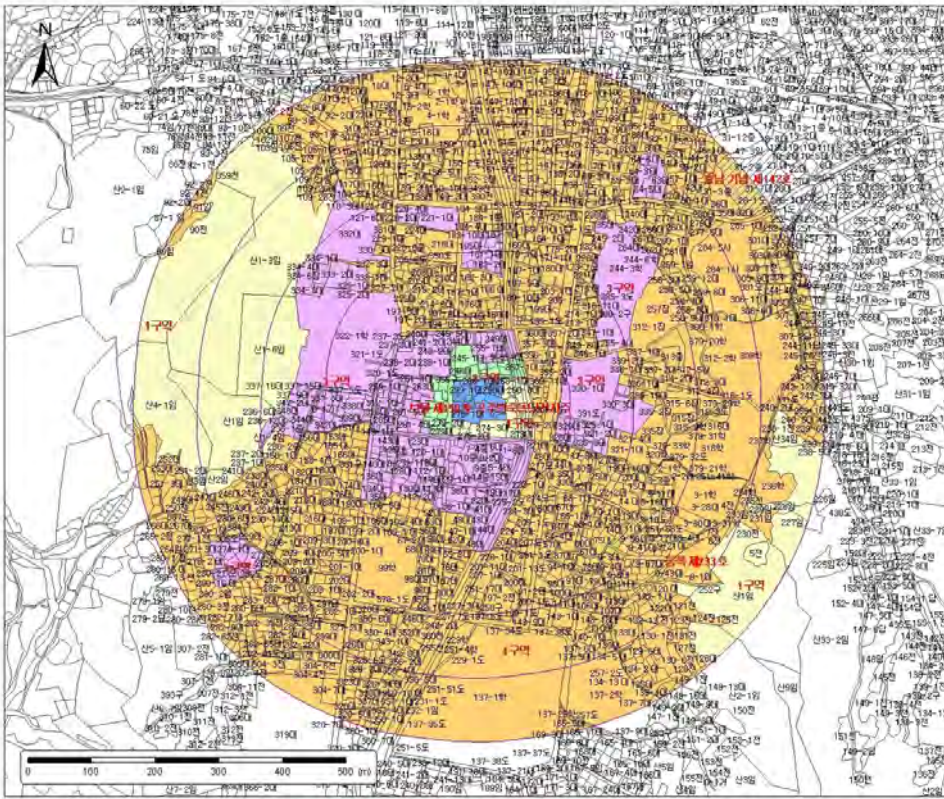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제3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시도지정문화재 인접지역은 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름 		

【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제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150호
공주반죽동당간지주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302-2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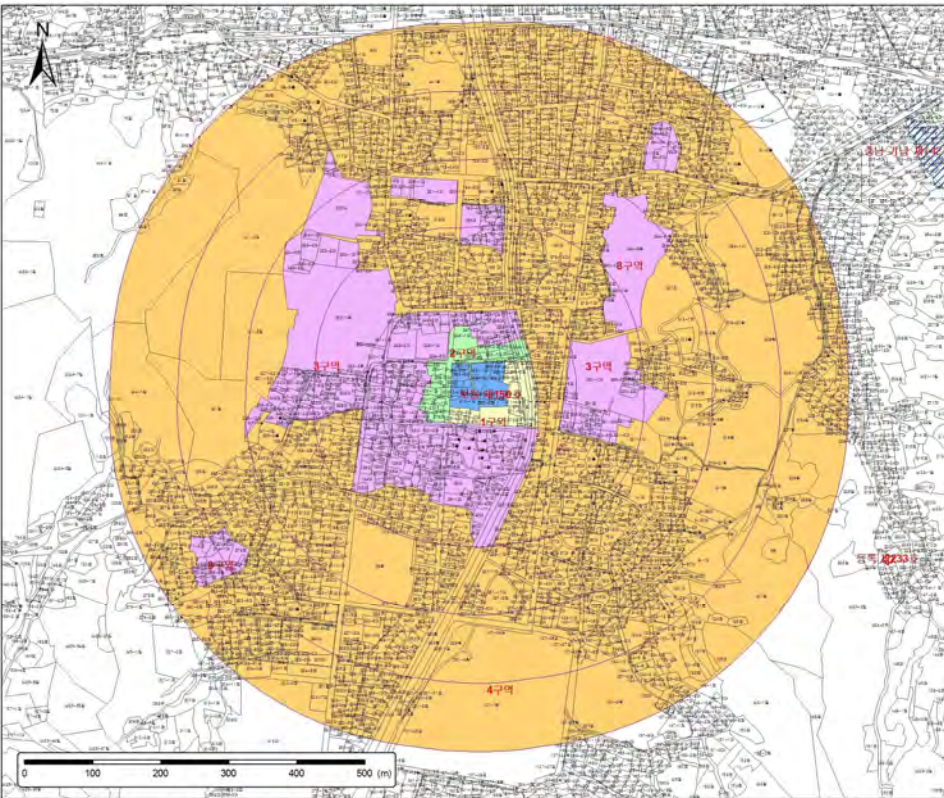
- 국가지정 지정구역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
- 연속지적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축척 1:4,800

【 변경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302-2 외

범례

- 국가지정 지정구역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
- 연속지적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축척 1:4,500

5.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184호
- 소재 지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536번지
- 지정 일 : 1963.01.21.

나. 검토의견

- 현행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설정된 1구역을 개별심의지역으로 변경

05. 보물 제184호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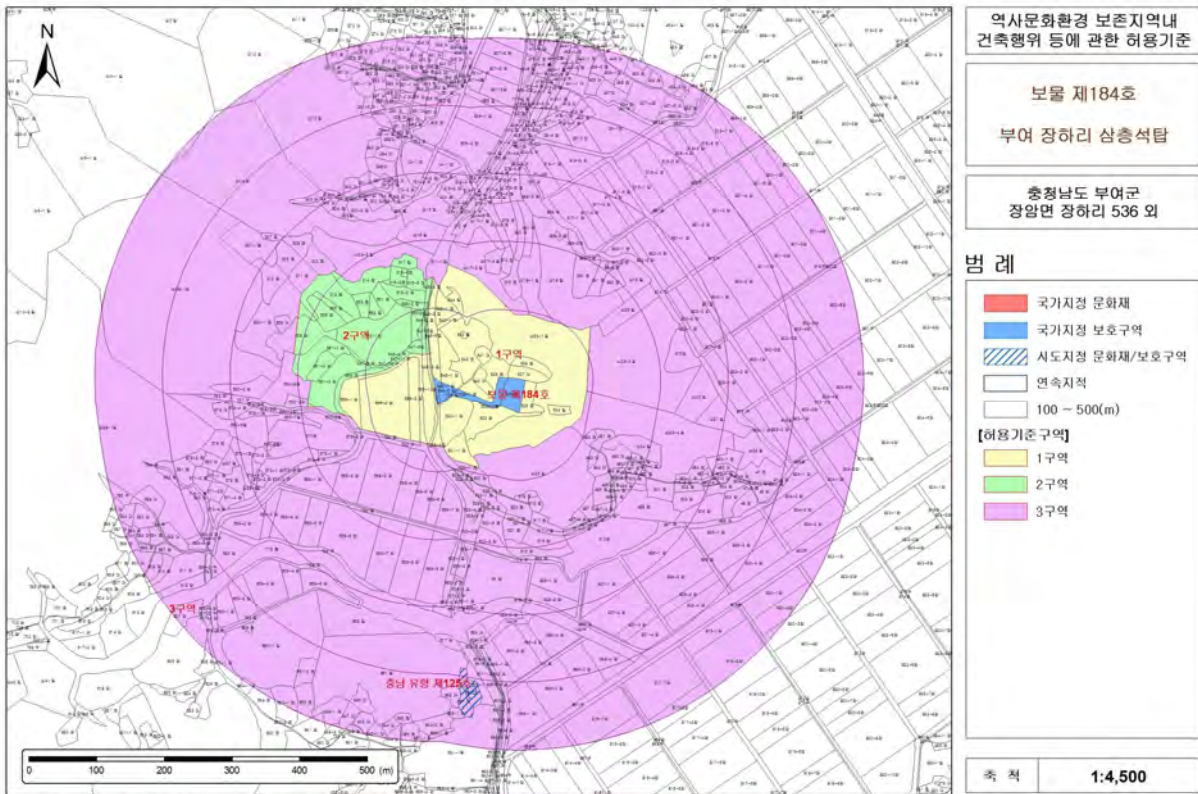
【 당 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p>○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p> <p>○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변 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변 경 】



6.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219호
- 소재 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08
- 지정 일 : 1963.01.21.

나. 검토의견

- 현행 허용기준상 원지정보존지역으로 설정된 1구역을 개별심의지역으로 변경

06. 보물 제219호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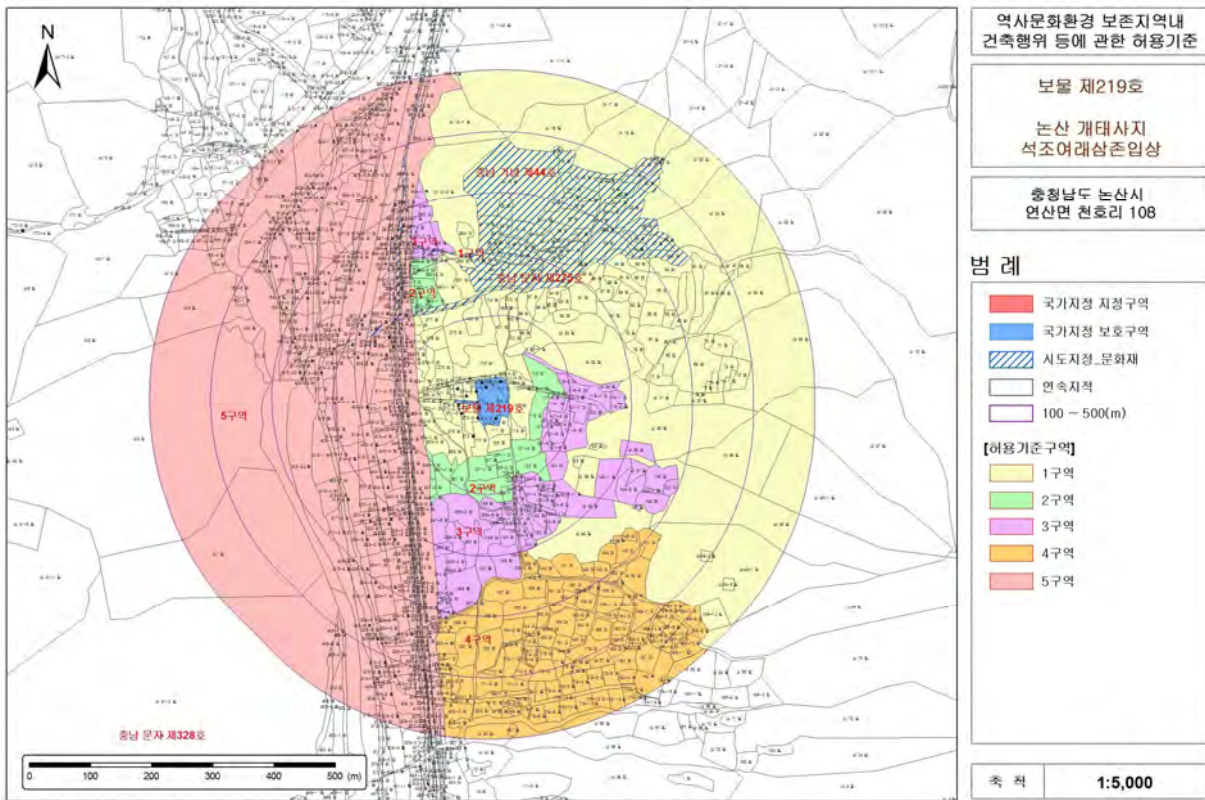
【 당 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p>○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p> <p>○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변 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변 경 】



7. 홍성 고산사 대응전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399호
- 소재 지 : 충남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127번길 35-99 (무량리)
- 지정 일 : 1963.09.02.

나. 검토의견

- 현행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설정된 1구역을 개별심의지역으로 변경
- 문화재 서북쪽 및 남쪽 능선너머 지역은 국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지역으로 신설

07. 보물 제399호 “홍성 고산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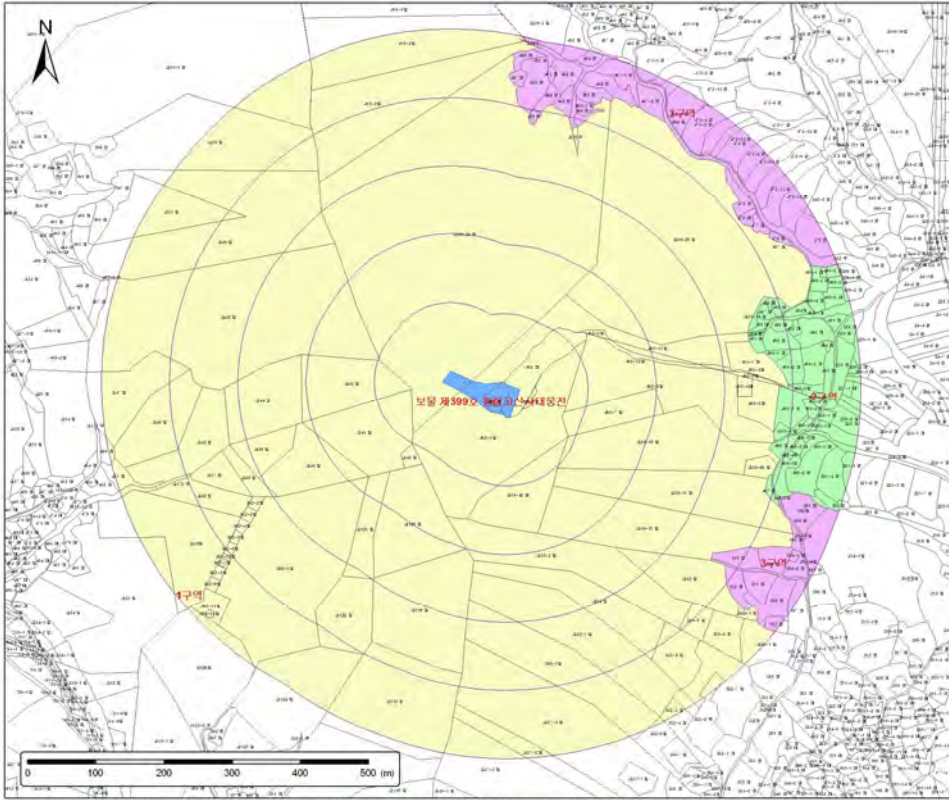
【 당 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p>○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p> <p>○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변 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동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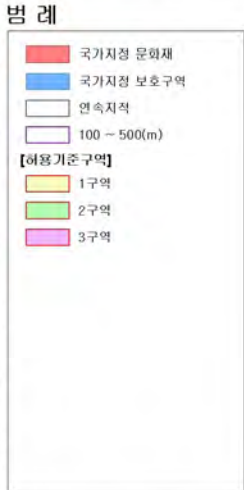
【 당 초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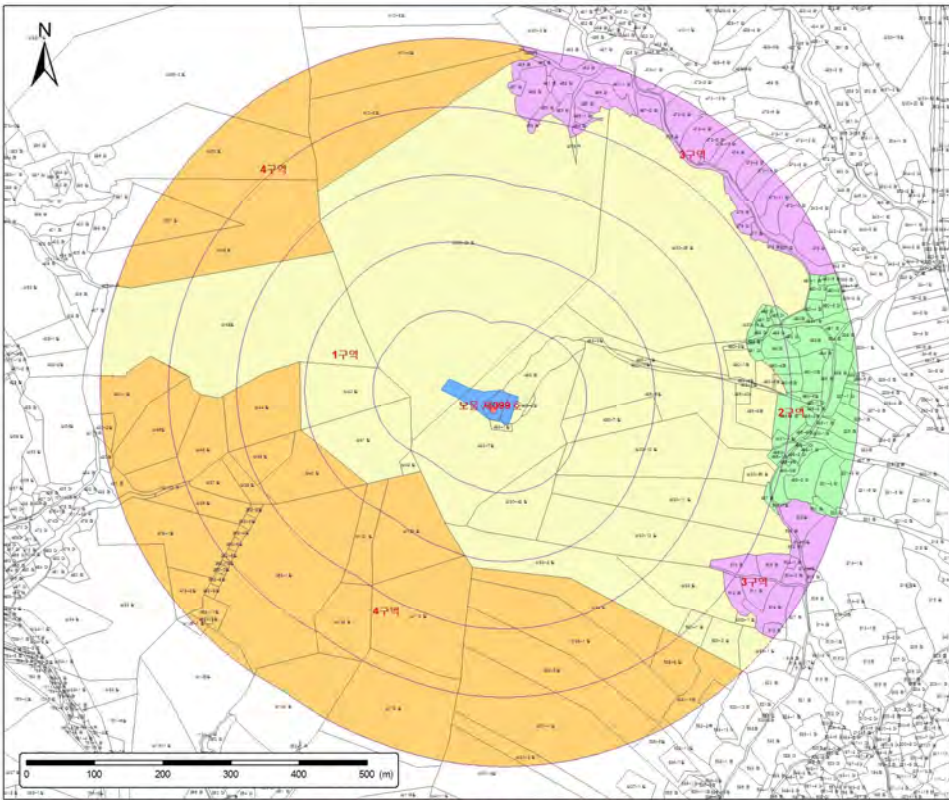
보물 제399호
홍성고산사대웅전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492 외



축척 1:4,500

【 변경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399호
홍성 고산사 대웅전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492 외



축척 1:4,500

8.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입상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492호
- 소재 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25-1
- 지정 일 : 1968.12.19.

나. 검토의견

- 진입부 초입 우측의 건물 동쪽은 산 능선에 가려 문화재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08. 보물 제492호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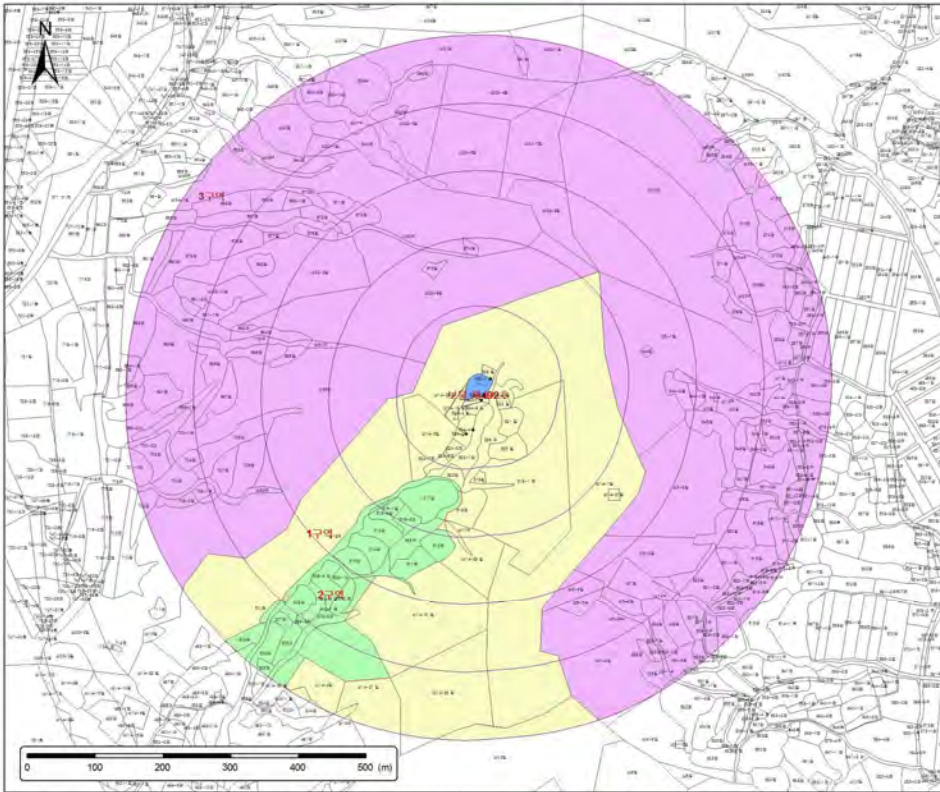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변 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p>○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당 초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492호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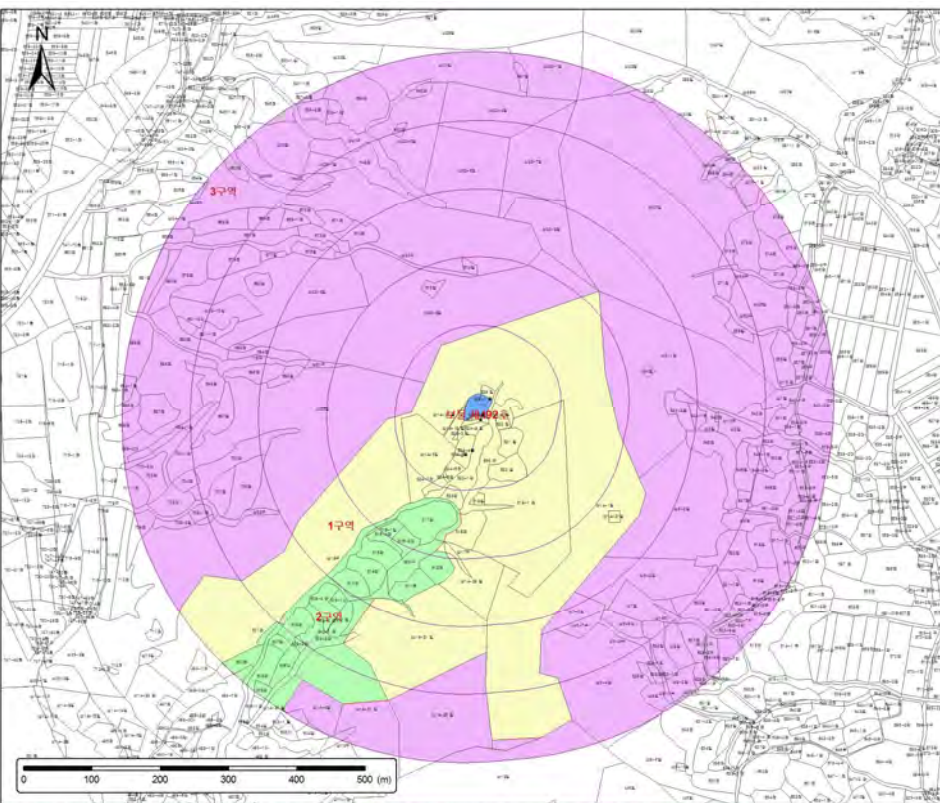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25-1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축척 1:4,500

【 변경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492호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25-1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축척 1:4,500

9.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600호
- 소재지 : 광주 동구 중심사길160번길 89, 약사암 (운림동)
- 지정 일 : 1975.08.04.

나. 검토의견

- 문화재의 남쪽에 능선으로 이격된 지역을 완화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09. 보물 제600호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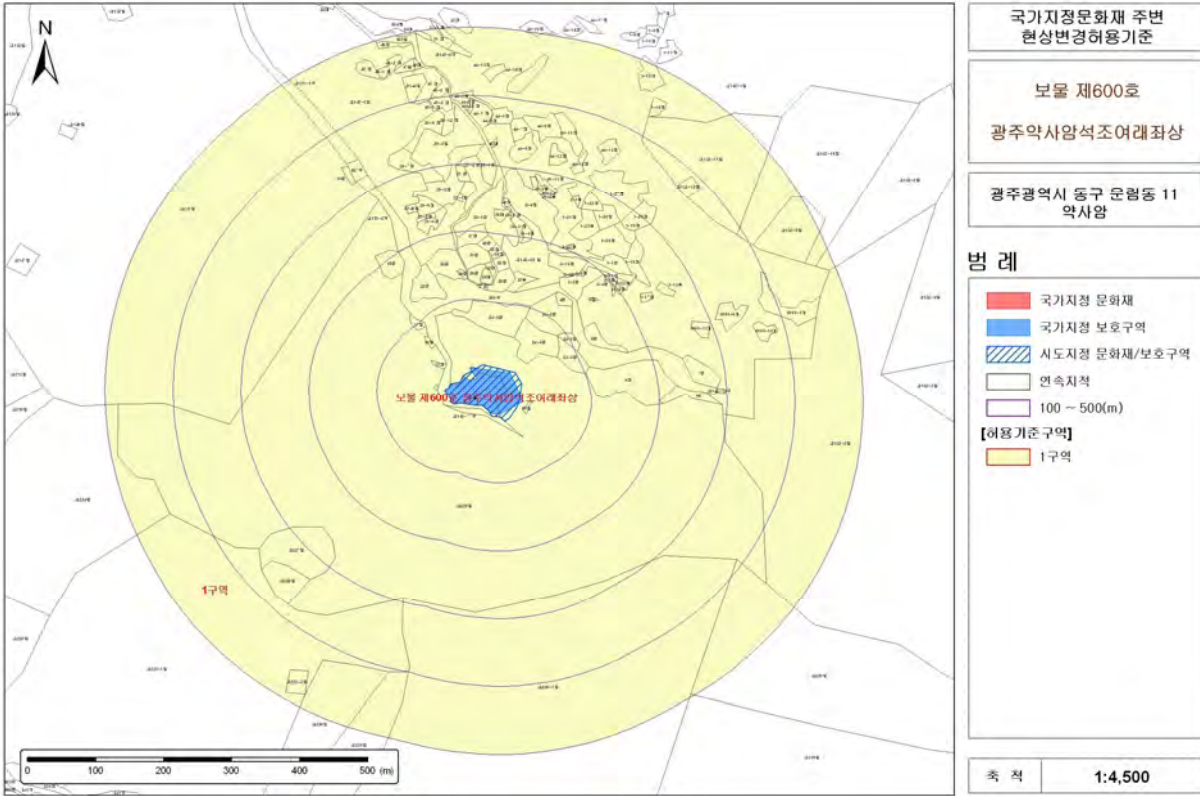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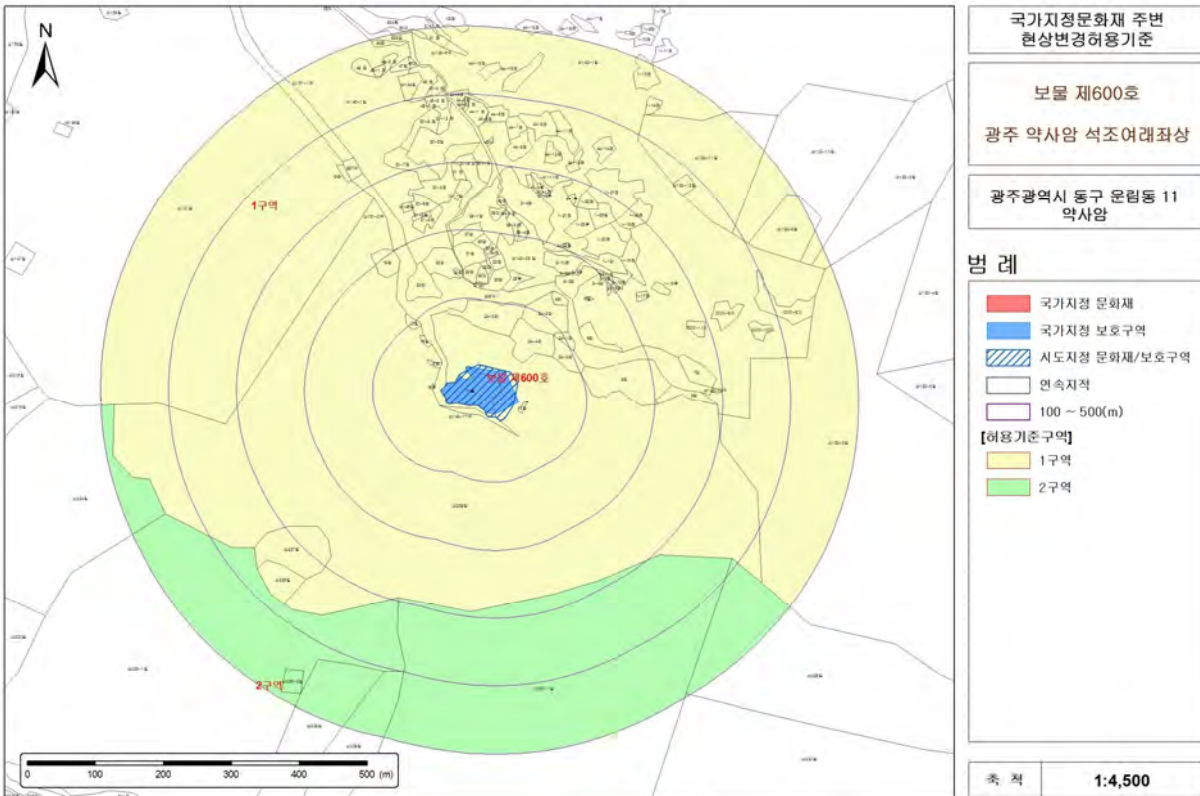
【 변 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 변경 】



10.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681호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 390-40 (석포리)
- 지정 일 : 1980.09.16.

나. 검토의견

-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보존이 잘 되어있는 상황으로 산 능선너머 보이지 않는 지역은 2구역으로 완화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10. 보물 제681호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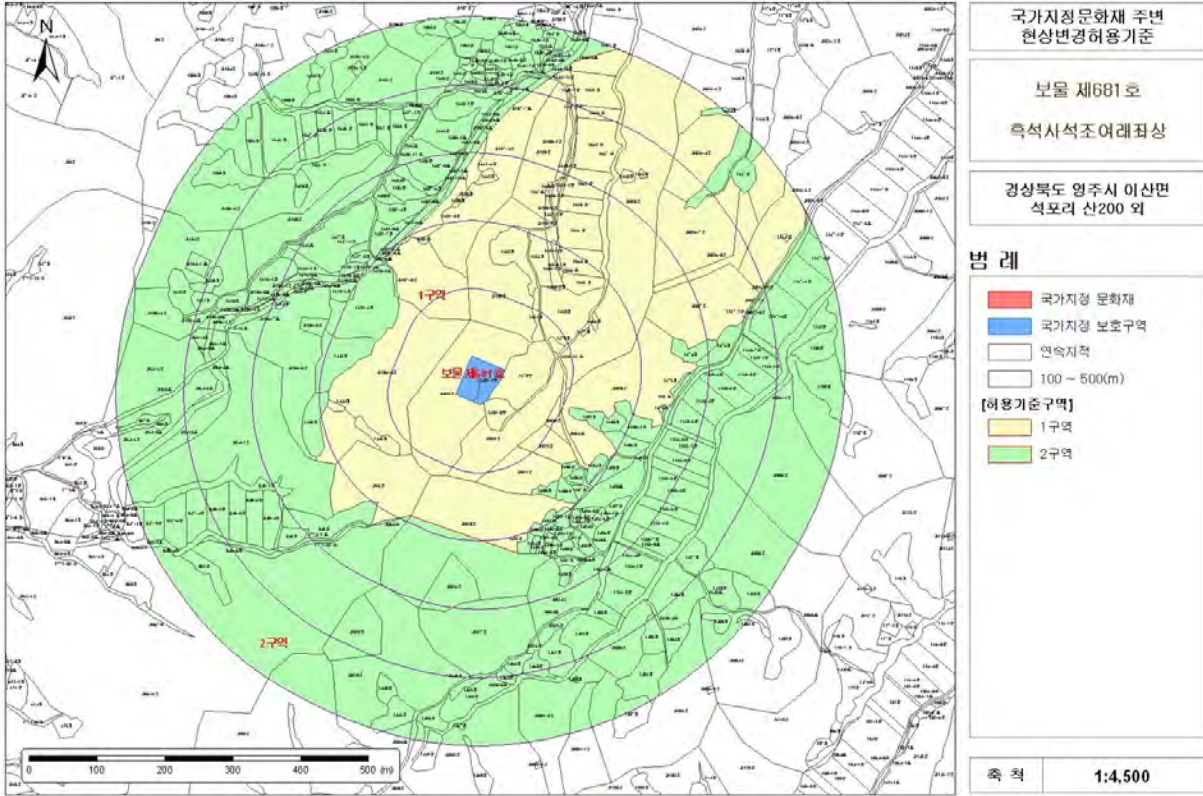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흑석사 경내는 제외)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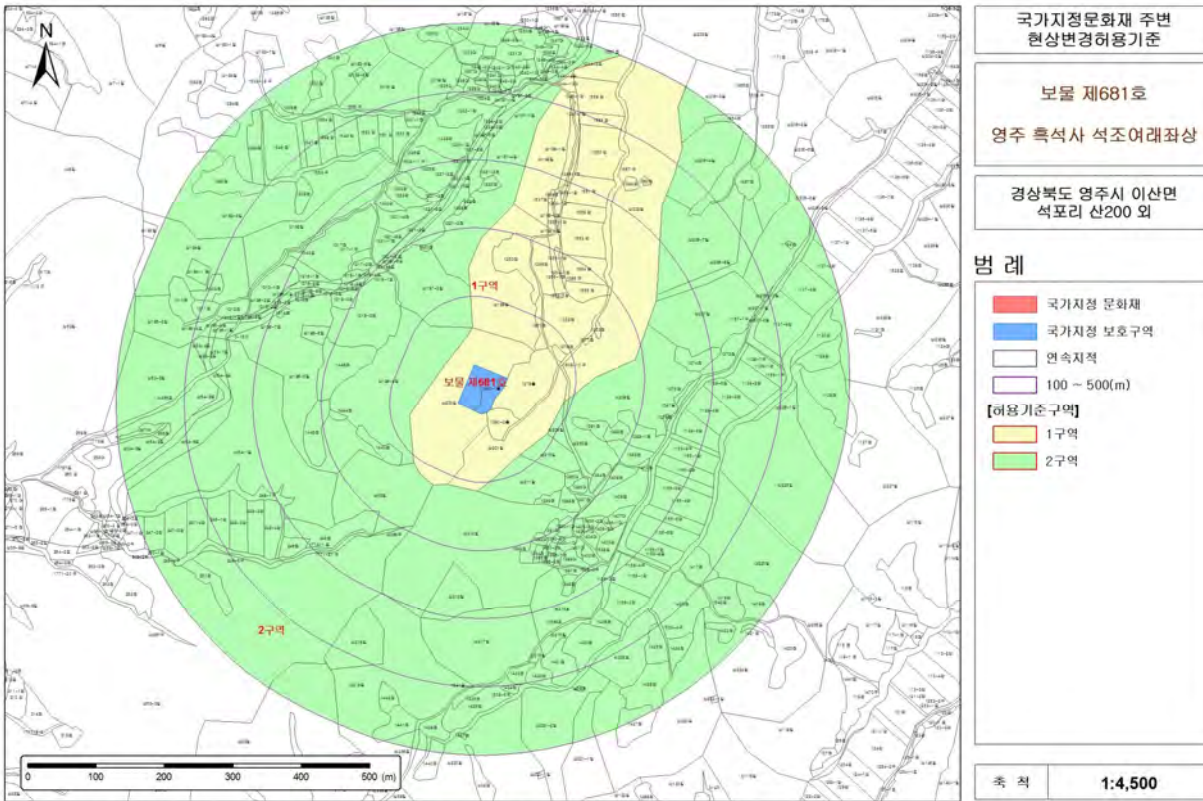
【 변 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p>○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당 초 】



【 변경 】



11.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790호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792 (치일리)
- 지정 일 : 1984.07.05.

나. 검토의견

- 문화재로부터 약 400m 이격되어 있고 능선으로 가로막혀 있으므로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하는 지역으로 조정하여도 무방함

11. 보물 제790호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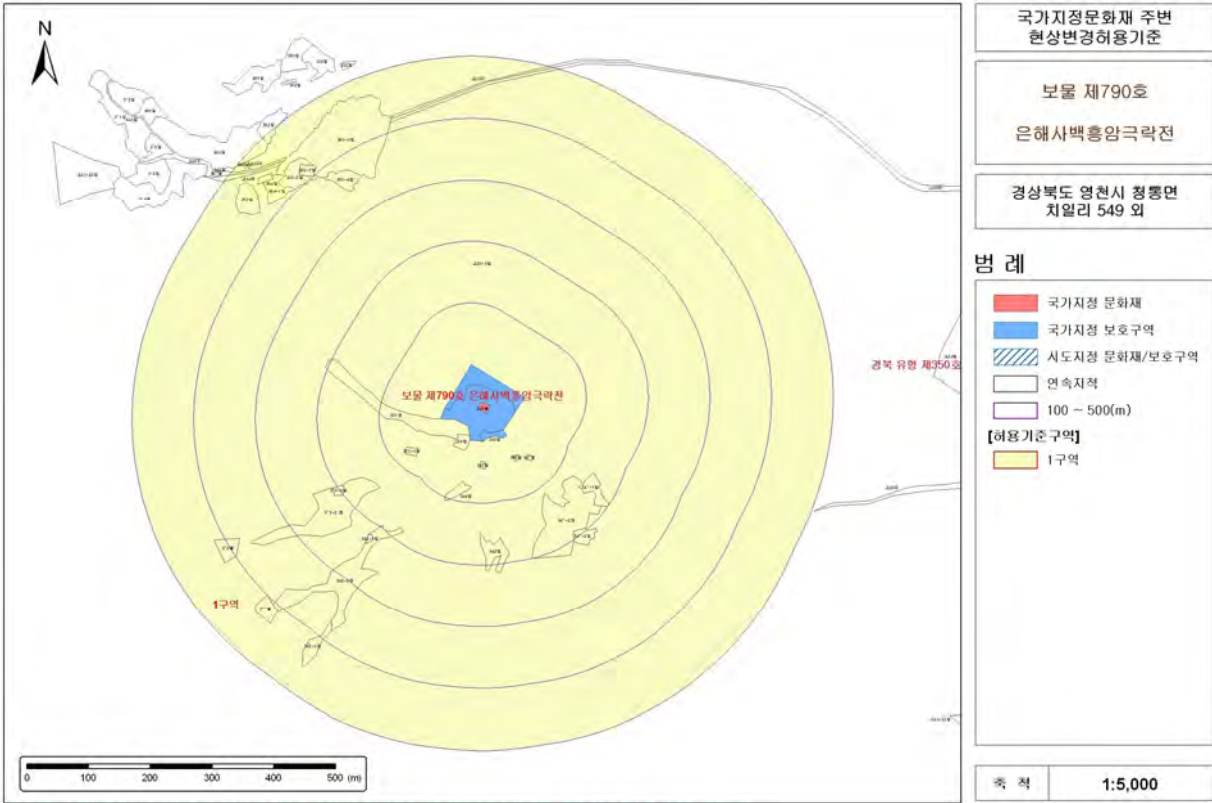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백흥암 경내는 제외)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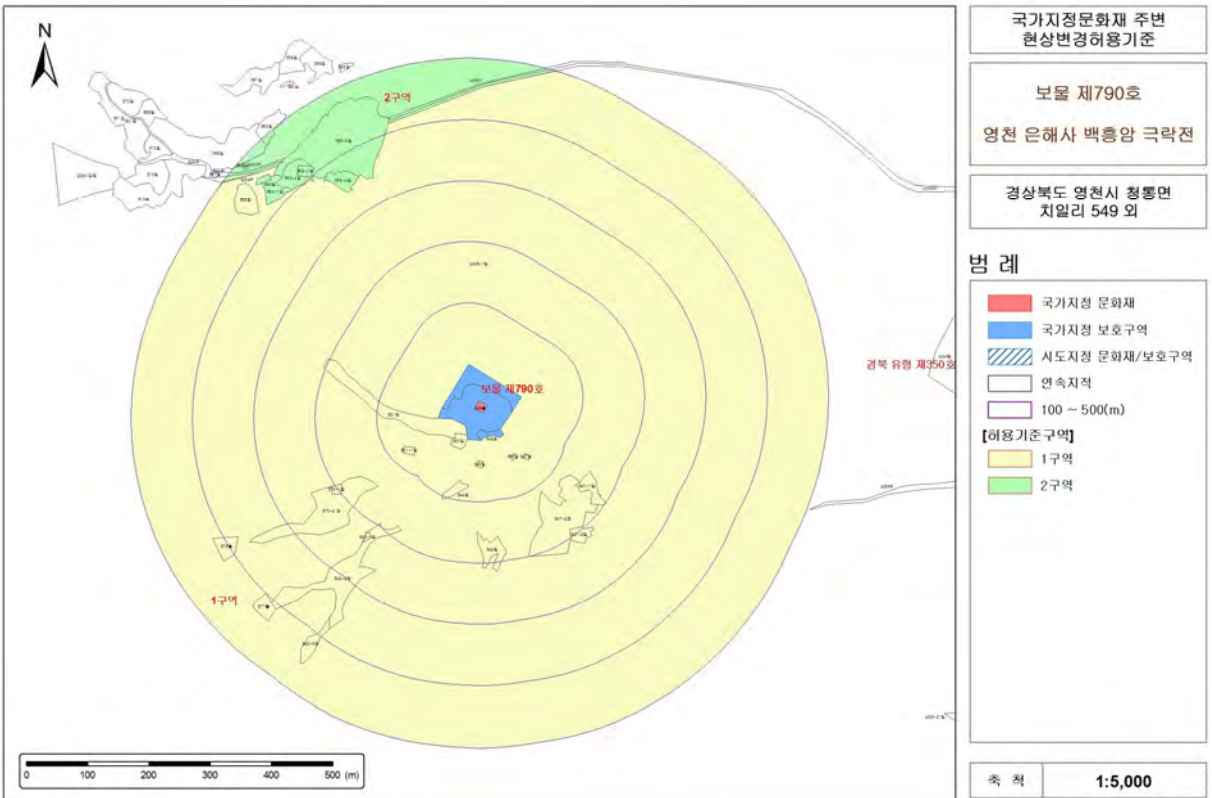
【 변 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 변 경 】



12.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및 목조광배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995호
- 소재 지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 축서사 (개단리)
- 지정 일 : 1989.04.10.

나. 검토의견

- 축서사는 임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능선너머 보이지 않는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12. 보물 제995호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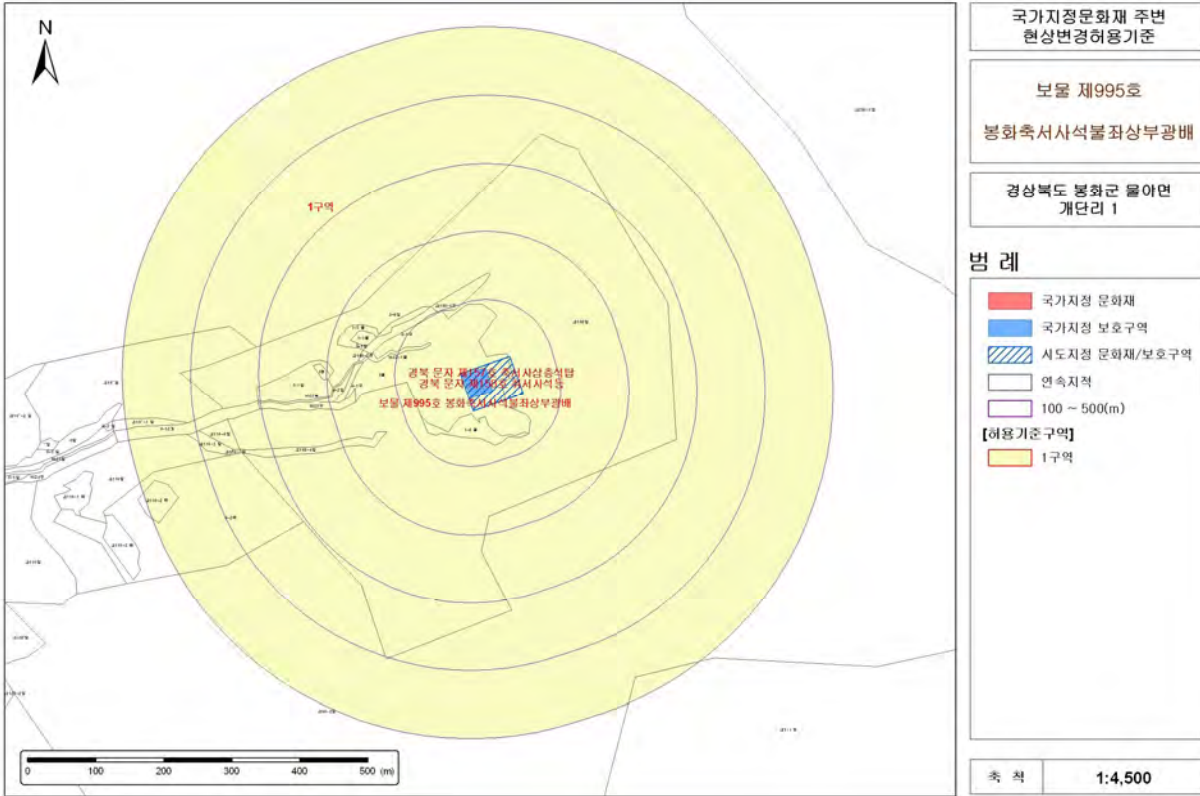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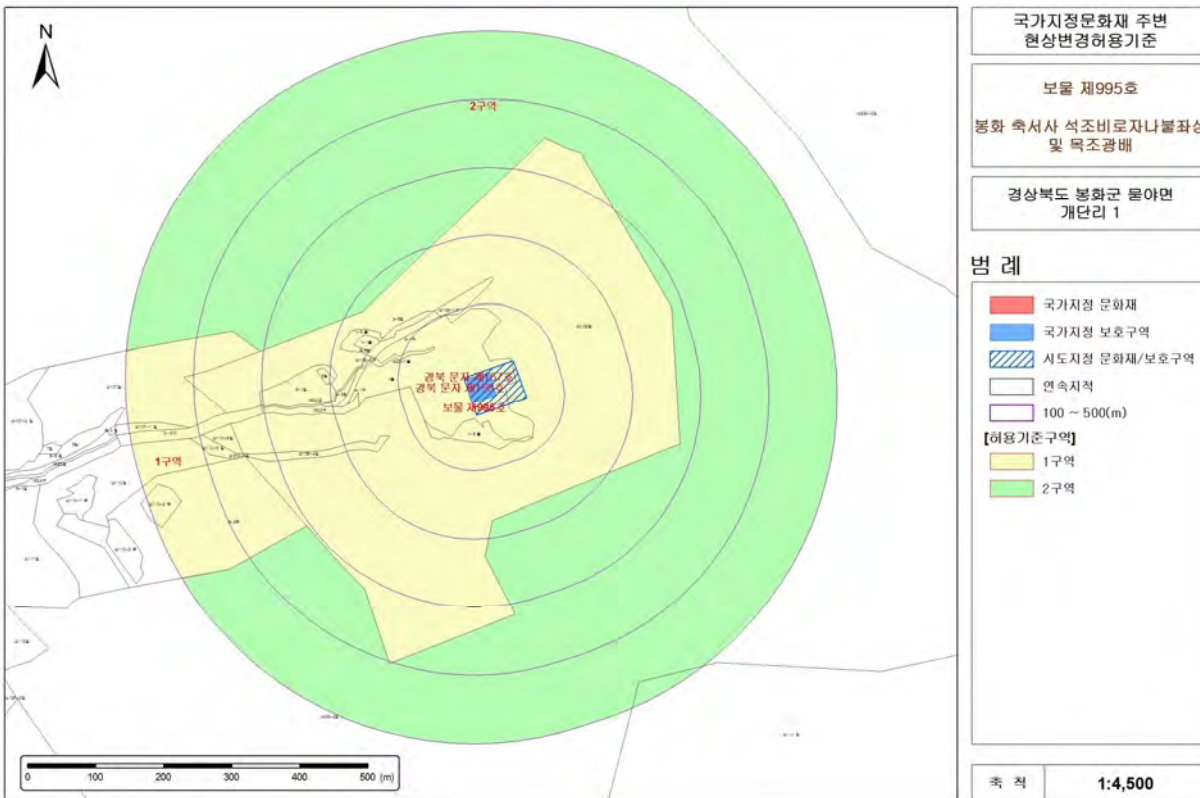
【 변 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 변경 】



13.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1121호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1길 67 (금봉리)
- 지정 일 : 1992.01.15.

나. 검토의견

- 금봉리석불좌상 전면의 임야지는 보존산지이고 멀리 있는 점을 고려하여 3구역으로 완화하되, 2구역과 접한 일부 준보전산지는 2구역으로 완화함이 좋겠음

13. 보물 제1121호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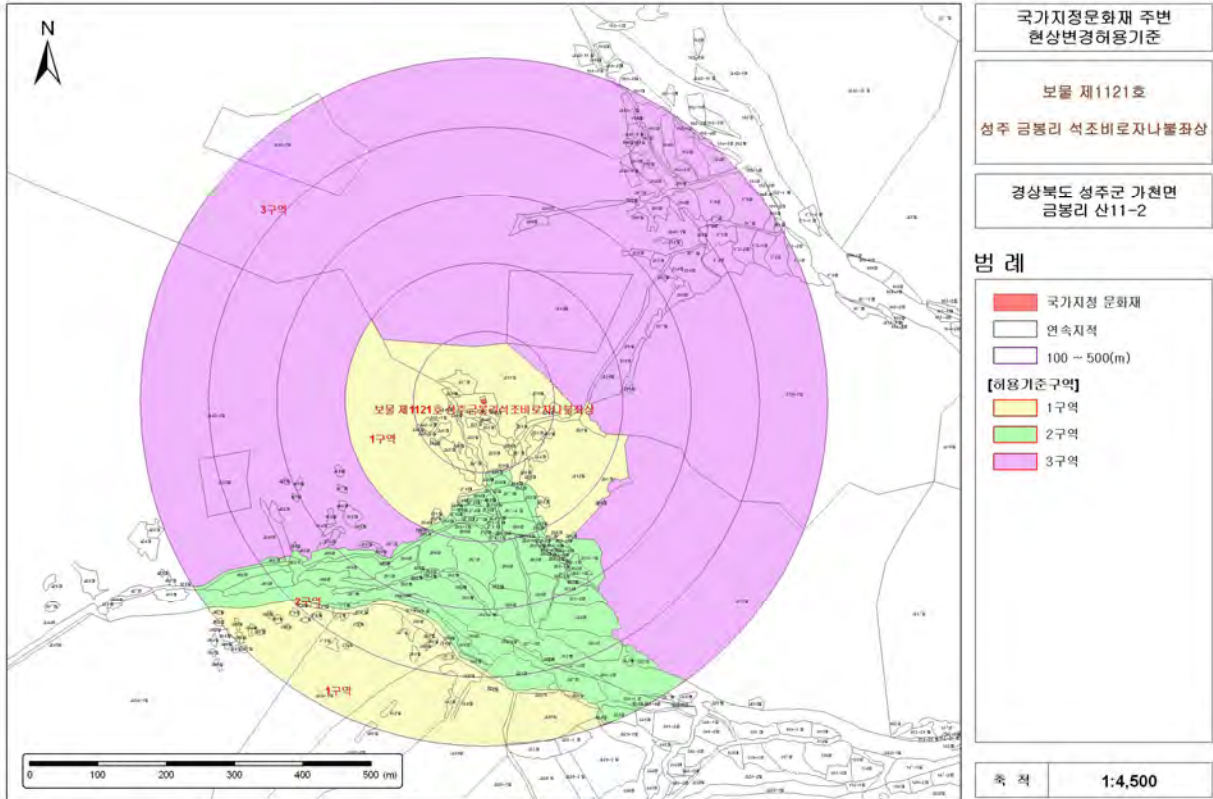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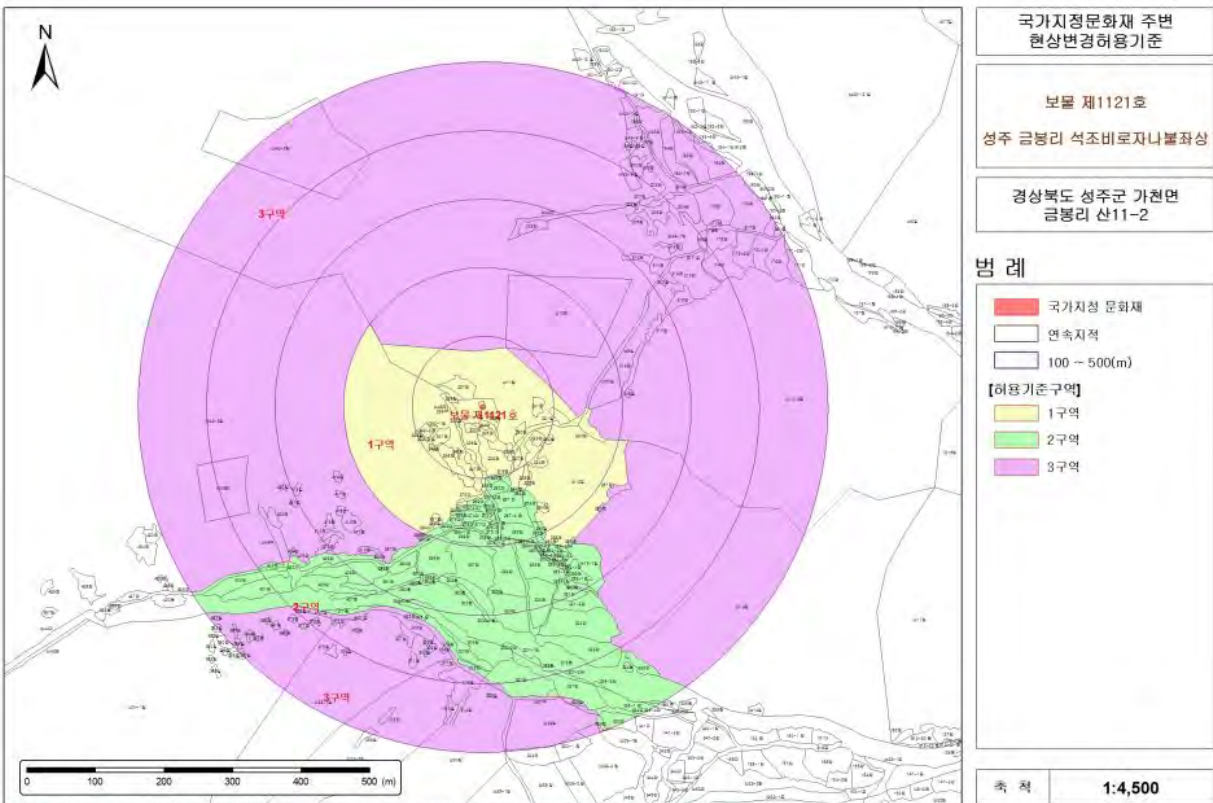
【 변 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p>○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p> <p>○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p>○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p>		

【 당 초 】



【 변경 】



14. 서울 살곳이 다리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1738호
- 소재지 : 서울 성동구 행당1동 58번지
- 지정 일 : 2011.12.23.

나. 검토의견

- 현행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설정된 1구역을 개별심의지역으로 변경
- 현행 2구역 허용기준은 국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지역으로 조정

14. 보물 제1738호 “서울 살곳이 다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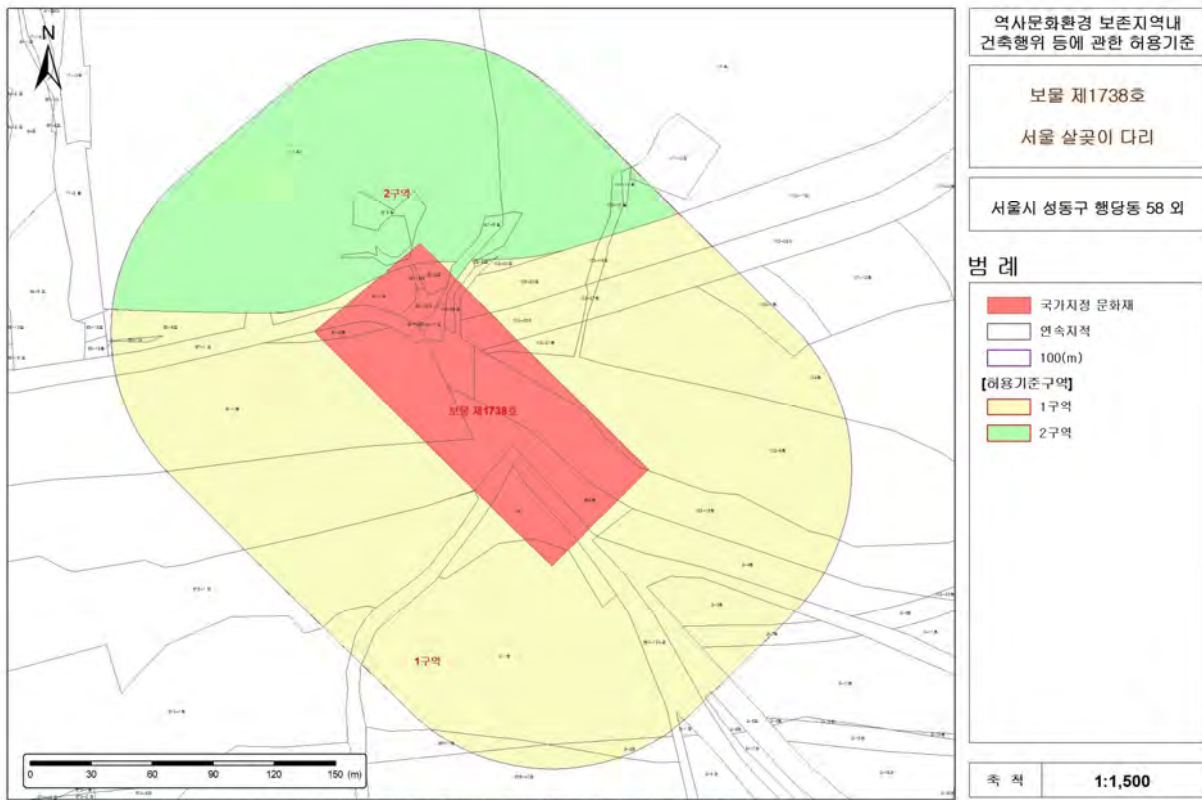
【 당 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보존구역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변 경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변 경 】



본 도면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시지 또는 자연지 상태를 나타내지 않으며,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5. 논산 노강서원 강당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1746호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27
- 지정 일 : 2011.12.30.

나. 검토의견

- 현행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설정된 1구역을 개별심의지역으로 변경

15.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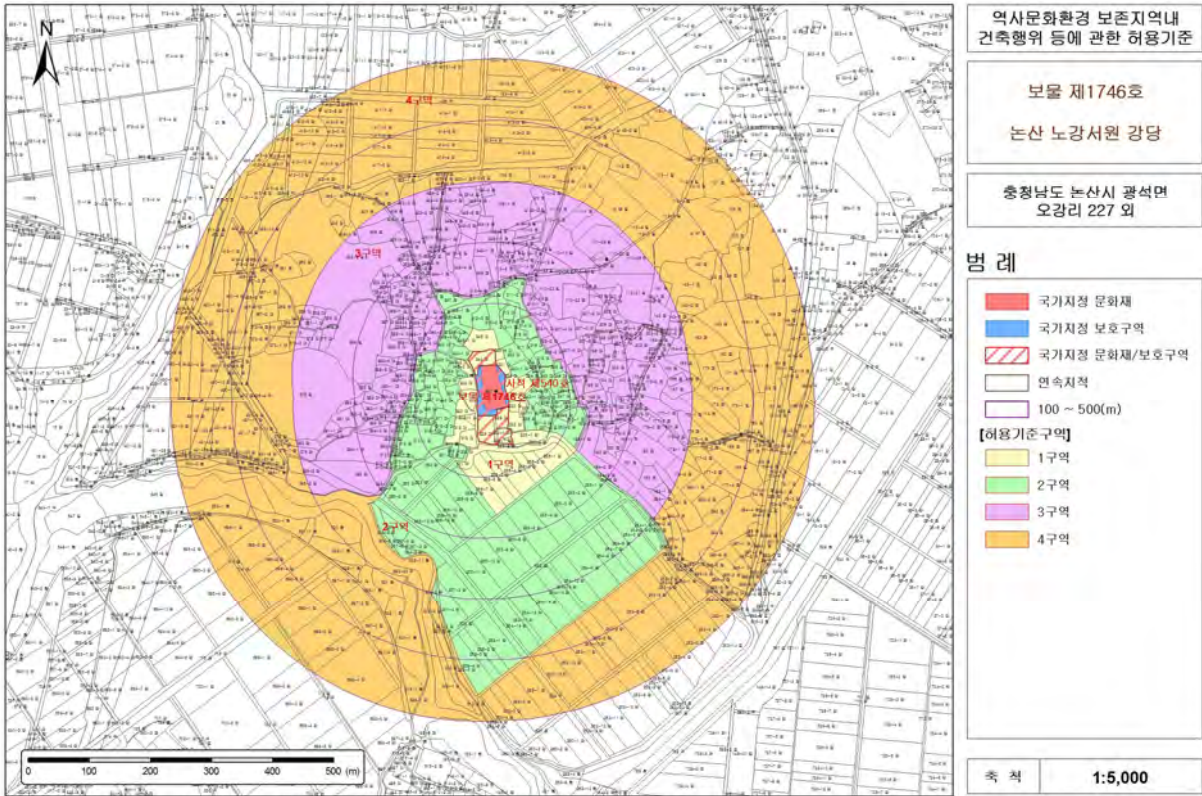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변 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변 경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7-13-020

20. 영주 부석사 종합정비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관련 부석사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관련 부석사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17년 제1차 종합정비계획 검토회의 실시(2017.10.17.)

다. 주요 내용

- (1) 신청인 : 영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부석사로345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종합정비계획 검토
 - 종합정비계획 주요내용
 - 1) 부석사의 창건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천과정 고찰
 - 2) 부석사 추정 가람 배치도 작성
 - 3) 문화재안내판 및 방향안내판 정비계획
 - 4) 진입로 경관 정비 및 일주문 주변 정비계획 등
 - 5) 편의시설, 홍보 관련 계획

라. 제1차 종합정비계획 검토회의 의견('17.10.17.)

- 학술·발굴 연구는 단기계획에서 우선 시행하되 건물 복원에 대한 사항은 유구정비까지 시행함. 건물 복원은 향후 재검토 함.
- 사업 시행에 대한 단계별 계획안 제시 필요
- 자문의견에 대한 반영 결과 제시
- 사적이나 명승 지정을 통해 보호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
- 주차장 주변 상가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방향제시
- 배수로 설치는 지양하고 지반정비를 통한 배수체계 정비를 조정
- 설법전 주변의 경관저해 요인에 대한 개선 필요
- 탐방객, 신도, 스님 등의 변화 추세를 고려한 관리운영계획 검토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문화재청 승인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6명, 부결 2명

21. 고창 선운사 종합정비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 고창군 소재 보물 「고창 선운사 대웅전」 관련 선운사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고창 선운사 대웅전」 관련 선운사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17년 제1차 종합정비계획 검토회의 실시(2017.10.17.)

다. 주요 내용

- (1) 신청인 : 고창군수
- (2) 대상문화재 : 고창 선운사 대웅전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선운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종합정비계획 내용
 - 예불영역
 - 영산전 주변 배수로 정비, 만세루 전면 석등 이전 등
 - 수행영역
 - 능인각 보수정비
 - 강학영역
 - 향운전 보수정비, 공양간 안전진단 및 건축공사

- 교육, 종무영역
 - 정보박물관 리모델링, 공양간 건축공사, 종무소 리모델링, 선다원 보수, 화장실 보수, 담장 정비 등
- 승가복지영역
 - 진입로 정비, 회중당·백우당·안식료·서별당 보수, 다정원 이축 및 리모델링, 종무원 숙소 발굴 및 신축 등
- 문화활용영역
 - 불교문화체험관 신축
- 산내암자
 - 암자터 종합조사 등
- 기타영역
 - 선운천 정비, 안내판 정비 등

라. 제1차 종합정비계획 검토회의 의견('17.10.17.)

- 기본 방향은 비교적 적절하나, 선운사 가람배치를 고려하여 사찰의 공간구조 재구성 검토 필요.
- 사역의 전통 가람배치에 대한 학술조사 필요
- 공양간, 종무소 등 개별 건물의 배치 및 동선체계에 대한 재검토

마. 의결사항

- 부결
 - 자문의견 미 반영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22.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검토·승인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우리 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종합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검증 절차 없이 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완료 처리되는 것에 대해 개선코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계획의 승인 방법

- '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에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을 포함하여 검토

○ 계획 승인 의미

-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축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및 역사문화경관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불가피한 보수정비 및 생활편의, 관람편의, 활용사업 등의 방향성을 종합적·개략적으로 우선 검토(기본구상 또는 기본계획 차원에서 검토)

○ 계획 검토 방향

- 사업비는 그 재원의 다양성을 감안 검토하지 않음
- 보호구역 내의 사업은 필요성,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보호구역 외의 사업은 문화재 주변경관 유지·관리 차원에서 검토

○ 계획 검토 방식

- 건축분과 문화재위원(3~5명)을 포함하는 자문회의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선 검토한 후 검토 완료된 계획을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라. 향후계획

-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검토 방식 개선내용 자치단체 알림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세부내용 보완 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6명, 부결 1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7-13-023

2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소호헌」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허가신청 18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8건	허가 12건 변경허가 2건 조건부허가 1건 불허 3건	
안동 소호헌	경북 안동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561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 접함) ○ 사업내용 - 구조 : 한식목구조/한식기와 - 건축면적(연면적) : 92.52㎡ - 높이 : 7.13m - 층수 : 지상 1층	허 가	'17.10.26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청송 대전사 보광전	경북 청송 (청송군수)	<input type="checkbox"/> 상수도 지하수 개발 공사 ○ 위치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대전사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0m 이격) ○ 내용 - 취수시설 증설 Q=100m ³ /일 - 지하관정 신설 D125mm, L=300.0m - 지하수 상부보호공 N=1개소	허 가	'17.10.26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전북 부안 (내소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행사(산사음악회) 개최 ○ 위치 :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6-1 일원 * 보호구역 내 ○ 행사날짜 : 2017.10.28(토) 14시~ ○ 행사내용 - 가수 공연, 불교전통문화 체험, 지역 특산물 및 농산물 홍보 ○ 행사시설 - 행사무대(900×800×30, 조립식판넬) ※ '17.10.27 설치, '17.10.29 철거	허 가	'17.10.26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 입상	충북 영동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건립 ○ 위치 :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20-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69m 이격) ○ 부지면적 : 886m ² ○ 건축(연)면적 : 80.82m ² (80.82m ²) ○ 구조 : 경량철골조 ○ 층수 및 높이 : 1층, 5.7m	허 가	'17.10.26
부산 운수사 대웅전	부산 사상 (운수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문화재 시굴조사 ○ 위치 :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 * 보호구역 내(문화재와 인접) ○ 사업내용 : 문화재 시굴조사 - 목적 :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위한 시굴조사 - 조사면적 : 4,067m ² - 트렌치 규모 : 400m ² , 13개소	허 가	'17.10.26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강원 홍천 (○○○)	<input type="checkbox"/>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재허가) ○ 위치 :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1번지 외 3필지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377m 이격) ○ 사업내용 :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 길이 : 75m - 포장 : 콘크리트 포장 336㎡ ※ '14년 9월 기허가 사항이나 기간 만료로 인한 재허가	허 가	'17.10.26
진주 용암사지 승탑	경남 진주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234-2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0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98.46㎡(98.46㎡) - 규모 : 1동, 높이 5.8m - 구조 : 경량철골조 - 마감 : 샌드위치 판넬 사이딩(벽체), 아스팔트싱글(지붕)	허 가	'17.10.26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	충남 공주 (한국전파기 지국(주))	<input type="checkbox"/> 이동통신 시설물 설치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산11-2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160m 이격) * 통신주(보호구역에서 400m 이격) ○ 내용 - 이동통신주 H=18m, 1개소 - 웬스 H=1.8m, L=12m - 전원선 지중매설 L=620m	허 가	'17.11.08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 상	충남 태안 (태안군수)	<input type="checkbox"/> 백화산 등산로 정비 ○ 위치 :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산235-1 외 2필지 * 제1구역(문화재에서 280m 이격) ○ 사업내용 : 데크계단 및 쉼터 설치 - 재료 : 합성목재 - 데크계단A : W1200, L22m, 27㎡ - 데크계단B : W1200, L18m, 22㎡ - 데크계단C : W1200, L15.2m, 18㎡ - 데크계단D : W1200, L12.67m, 15㎡ - 데크계단E : W1200, L20.063m, 23㎡ - 데크계단F : W1200, L31.84m, 38㎡ - 데크쉼터 L7000, 34㎡	허 가	'17.11.08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 (창녕군수)	<input type="checkbox"/> 하천 오수유입 차단을 위한 신설 관로 설치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74번지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10m 이격) ○ 사업내용 : 관로 설치 - 길이 : 41.1m - 직경 : 200mm * 하천 바닥 아래 1m 깊이로 오수관 매립	허 가	'17.11.08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전남 나주 (○○○)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온실) 축조 ○ 위치 : 나주시 삼도동 1384-1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5m 이격) ○ 연면적 : 437㎡ ○ 건축구조 : 강파이프구조(비닐) ○ 층수 및 높이 : 1층, 4.5m	허 가	'17.11.08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전북 부안 (내소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패불대 철거 ○ 위치 :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 보호구역 내 ○ 대웅보전 앞 패불대 철거	허 가	'17.11.08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경북 예천 (○○○ 외 1인)	<input type="checkbox"/>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사항 변경) ○ 위치 :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49-7 * 제5구역(보호구역에서 407m 이격) ○ 내용 <table border="1" data-bbox="544 595 1126 1189"> <thead> <tr> <th>구분</th> <th>당초</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td> <td>549m²</td> <td>좌동</td> </tr> <tr> <td>건축면적 (연면적)</td> <td>232.39m² (1,869.69m²)</td> <td>237.0875m² (1,840.8235m²)</td> </tr> <tr> <td>층수</td> <td>지하 1층, 지상 15층</td> <td>지하 1층, 지상 14층</td> </tr> <tr> <td>높이</td> <td>48m</td> <td>48.8m</td> </tr> <tr> <td>구조</td> <td>철근콘크리트 구조</td> <td>좌동</td> </tr> <tr> <td>마감</td> <td>석재건식 마감</td> <td>수성페인트마 감</td> </tr> </tbody> </table> ※ '17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구분	당초	변경	대지면적	549m ²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232.39m ² (1,869.69m ²)	237.0875m ² (1,840.8235m ²)	층수	지하 1층, 지상 15층	지하 1층, 지상 14층	높이	48m	48.8m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좌동	마감	석재건식 마감	수성페인트마 감	변경허가	'17.10.26
구분	당초	변경																							
대지면적	549m ²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232.39m ² (1,869.69m ²)	237.0875m ² (1,840.8235m ²)																							
층수	지하 1층, 지상 15층	지하 1층, 지상 14층																							
높이	48m	48.8m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좌동																							
마감	석재건식 마감	수성페인트마 감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울산 울주 (○○○)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 ○ 위치 : 울주군 상북면 등역알프스리 535-5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309m 이격) ○ 사업내용 : 숙박시설 신축 <table border="1" data-bbox="555 1525 1118 1928"> <thead> <tr> <th>구분</th> <th>당초</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td> <td>750.40m²</td> <td>800.88m²</td> </tr> <tr> <td>연면적 (지상층)</td> <td>1,762.2m² (1,575.3m²)</td> <td>1,770.9m² (1,770.9m²)</td> </tr> <tr> <td>규모</td> <td>지하 1층 지상 3층</td> <td>지상 3층</td> </tr> <tr> <td>높이</td> <td>18.0m</td> <td>17.8m</td> </tr> <tr> <td>구조</td> <td>철근콘크리트조</td> <td>좌동</td> </tr> </tbody> </table>	구분	당초	변경	건축면적	750.40m ²	800.88m ²	연면적 (지상층)	1,762.2m ² (1,575.3m ²)	1,770.9m ² (1,770.9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지상 3층	높이	18.0m	17.8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변경허가	'17.11.08			
구분	당초	변경																							
건축면적	750.40m ²	800.88m ²																							
연면적 (지상층)	1,762.2m ² (1,575.3m ²)	1,770.9m ² (1,770.9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지상 3층																							
높이	18.0m	17.8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청송 대전사 보광전	경북 청송 (청송군수)	<input type="checkbox"/> 하수관로 설치·교체 공사 ○ 위치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외 * 제1구역 및 보호구역 내 ○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규격</th> <th>길이(m)</th> <th>폭(m)</th> </tr> </thead> <tbody> <tr> <td>신설</td> <td>D80</td> <td>38</td> <td>0.83~1.25</td> </tr> <tr> <td>신설</td> <td>D200</td> <td>180</td> <td>1.13~1.68</td> </tr> <tr> <td>교체</td> <td>D200</td> <td>1,315.1</td> <td>1.20~1.68</td> </tr> <tr> <td>계</td> <td></td> <td>1,533.1</td> <td></td> </tr> </tbody> </table> * 천기과의견 - 유물분포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하수도관로 교체 및 신설공사 후 지형이 원형으로 복구한다면 명승 경관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구분	규격	길이(m)	폭(m)	신설	D80	38	0.83~1.25	신설	D200	180	1.13~1.68	교체	D200	1,315.1	1.20~1.68	계		1,533.1		조건부허가 (사역과 접한 부분 굴착시 관계 전문가 입회 조사)	'17.11.08
구분	규격	길이(m)	폭(m)																					
신설	D80	38	0.83~1.25																					
신설	D200	180	1.13~1.68																					
교체	D200	1,315.1	1.20~1.68																					
계		1,533.1																						
정읍 피향정	전북 정읍 (정읍시장)	<input type="checkbox"/> 함벽루 증축 및 테크설치 ○ 위치 :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3-2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함벽루 증축 : 높이증가 70cm - 강화유리 테크 설치(16m×6m, 난간설치) - 자연석 계단 철거, 목재 계단 재설치	불허 (역사문화 경관 저해)	'17.10.26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침비	전남 여수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건립 ○ 위치 : 여수시 고소동 619 * 보호구역 내 ○ 부지면적 : 889m ² ○ 건축면적(연면적) : 166.5m ² (166.5m ²) ○ 구조 : 경량철골조 ○ 층수 및 높이 : 1층, 5.25m	불허 (보존관리 계획 수립 지역)	'17.10.26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울산 울주 (○○○)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펜션) 신축 ○ 위치 :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16-5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38m 이격) ○ 사업내용 : 숙박시설(펜션)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98㎡(198㎡) - 규모 : 3동, 높이 4.4m, - L형옹벽 높이 : 5m / 법면 높이 : 1.66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마감 : 시멘트사이딩(외벽), 아스팔트 형글(지붕)	불허 (역사문화 경관 저해)	'17.10.26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접수 7명